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1 권

### [총괄편]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훈령 제 834호)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농어촌투융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농림부 도서실



0001260

농림수산부

00

2.1  
239L  
1995/1권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5. 11

## 제 1 권

### [ 총 관 편 ]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훈령 제 834호)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농어촌투융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농림수산부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60

등록일: 2004년 7월 29일

기증:



# 목 차

## [총괄편]

내 용	권	쪽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	제1권	11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	57
3. 참고자료	"	87
① 농림수산사업 추진 흐름도	"	88
② 농어촌 투융자계획		
- 42조원 조기투융자계획 .....	"	90
- 농어촌특별세 투융자계획 .....	"	95
③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안내	"	100
④ 농업용시설 농지전용 허가·신고 안내	"	111
⑤ 농업용시설 건축 허가·신고 안내	제1권	116

[농업·농촌구조개선편]

※ 표시예)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 :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1. 인 력 육 성	1)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제2권	7
	2) 전업농 육성(자율)	"	49
	3) 선도농업경영체 육성(공공)	"	86
	4) 농민학습단체육성 및 품목별 농민전문교육(공공)	"	99
	5)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공공)	"	110
2. 생산기반조성	1)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조사사업(공공)	"	215
	2)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공공)	"	121
	3)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공공)	"	145
	4)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공공)	"	152
	5) 지하수개발사업(공공)	"	158
	6)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공공)	"	174
	7) 방조제 개보수사업(공공)	"	188
	8) 농조 저수지준설사업(공공)	"	204
	9) 수해복구사업(공공)	"	214
	10) 배수개선사업(공공)	"	218
	11) 서남해안 간척사업(공공)	"	247
	12)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	263
	13) 발기반정비사업(공공)	"	281
	14) 일반 경지정리사업(공공)	제2권	296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3. 영농규모화	15)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공공)	제2권	305
	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공)	"	323
	1)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자율)	"	341
	2)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	"	376
	3)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	"	378
4. 농업기계화	1)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자율)	"	383
	2)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자율)	"	427
	3)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자율)	"	448
	4) 농업기계 사후관리지원(공공)	"	455
	5)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및 생산자금 지원(공공)	"	476
5. 기술개발 및 정보화	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	483
	2) 농림수산정보화사업(공공)	"	494
	3) 농지 전산화사업(공공) ✓	"	497
	4) 농어촌개발 시험연구사업(공공)	"	500
	5)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공공)	"	504
	6)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공공)	"	507
	7)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공공)	"	510
	8) 지역특화 및 새기술시범사업(공공)	"	514
	9)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공공)	"	520
	10)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공공)	제2권	522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6. 소득원개발및 소득지원	1)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채출)	제2권	529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채출)	"	580
	3)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공공)	"	607
	4) 한계농지 정비사업(공공)	"	612
	5) 농공단지 조성(공공)	"	627
	6) 농업경영자금 지원(공공)	"	638
	7)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	"	642
7. 생활환경개선	1)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채출)	"	657
	2) 일반 정주권개발사업(공공)	"	664
	3) 문화마을 조성사업(공공)	"	685
	4)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공공)	"	701
	5)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	제2권	719

[농축산물생산·유통]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1. 쌀·발작물생산	1) 벼 직파재배지원(자율)	제3권	7
	2) 감자원종 망실재배(자율)	"	15
	3)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자율)	"	20
	4) 토양개량제 공급(자율)	"	27
	5)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자율)	"	34
	6)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자금 지원(공공)	"	38
	7) 공동·항공방제(공공)	"	42
2. 원예·특작생산	1)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9
	2)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69
	3)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80
	4)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89
	5)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09
	6) 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22
	7) 잠종 및 원잠종생산(자율)	"	135
	8) 인삼생산지원(자율)	"	139
	9) 고품질 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 지원(공공)	"	144
	10)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지원(공공)	"	148
	11) 과수포트대표 생산사업(공공)	제3권	151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3. 농산물유통·가공 및 수출	가. 농산물수급 및 판매·수출	제3권	153
	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자율)	"	157
	2) 생산자(단체) 출하조절 지원(공공)	"	165
	3)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공공)	"	168
	4) 농수산물 구매지원(공공)	"	178
	5)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공)	"	184
	6) 채소 유통활성화사업(공공)	"	191
	7) 과실·화훼 판매촉진사업(공공)	"	196
	8) 산지 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	199
	9)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지원(공공)	"	202
	10) 해외시장 개척사업(공공)	"	206
	11) 해외시장정보 조사사업(공공)	"	210
	나. 농산물유통·가공시설	"	215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및 운영지원(자율)	"	217
	2) 임도정공장 통폐합·시설대체(자율)	"	236
	3) 꽃직판장설치지원사업(자율)	"	243
	4)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자율)	"	246
	5) 농산물포장센터 건설(공공)	"	256
	6)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공)	"	266
	7) 농산물공판장 건설(공공)	"	274
	8)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공공)	"	282
	9) 인삼종합처리장 설치(공공)	"	294
	10) 인삼종합전시장 설치(공공)	"	297
	11) 화훼공판장 건설지원사업(공공)	"	299
12)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공공)	제3권	302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4. 축산물생산·유통	가. 사육기반조성	제3권	369
	1)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자율)	"	373
	2) 젓소 경쟁력제고사업(자율)	"	392
	3) 돼지 경쟁력제고사업(자율)	"	403
	4) 닭 경쟁력제고사업(자율)	"	412
	5) 기타가축 육성지원(자율)	"	421
	6) 축산단지 조성사업(공공)	"	428
	7) 축산기자재생산시설 지원사업(공공)	"	436
	8) 소 수급관리전산화(공공)	"	441
	9)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	446
	10)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	467
	11) 가축방역(공공)	"	486
	12)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사업(공공)	"	526
	13) 전문종돈업육성(공공)	"	535
	14) 한우 쌍자생산지원(공공)	"	542
	15)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	"	545
	16)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공공)	"	568
	17) 양축자금 지원(공공)	"	580
	나. 축산물수급 및 유통	"	585
	1) 가축계열화사업(공공)	"	587
	2) 축산물검사(공공)	"	597
	3) 도축 도매시설개선(공공)	"	605
	4) 축산물 종합처리장건설(공공)	"	612
	5) 축산물 등급판정사업(공공)	"	621
	6) 축산물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	626
	7) 학교 우유급식(공공)	제3권	652

[임업·어업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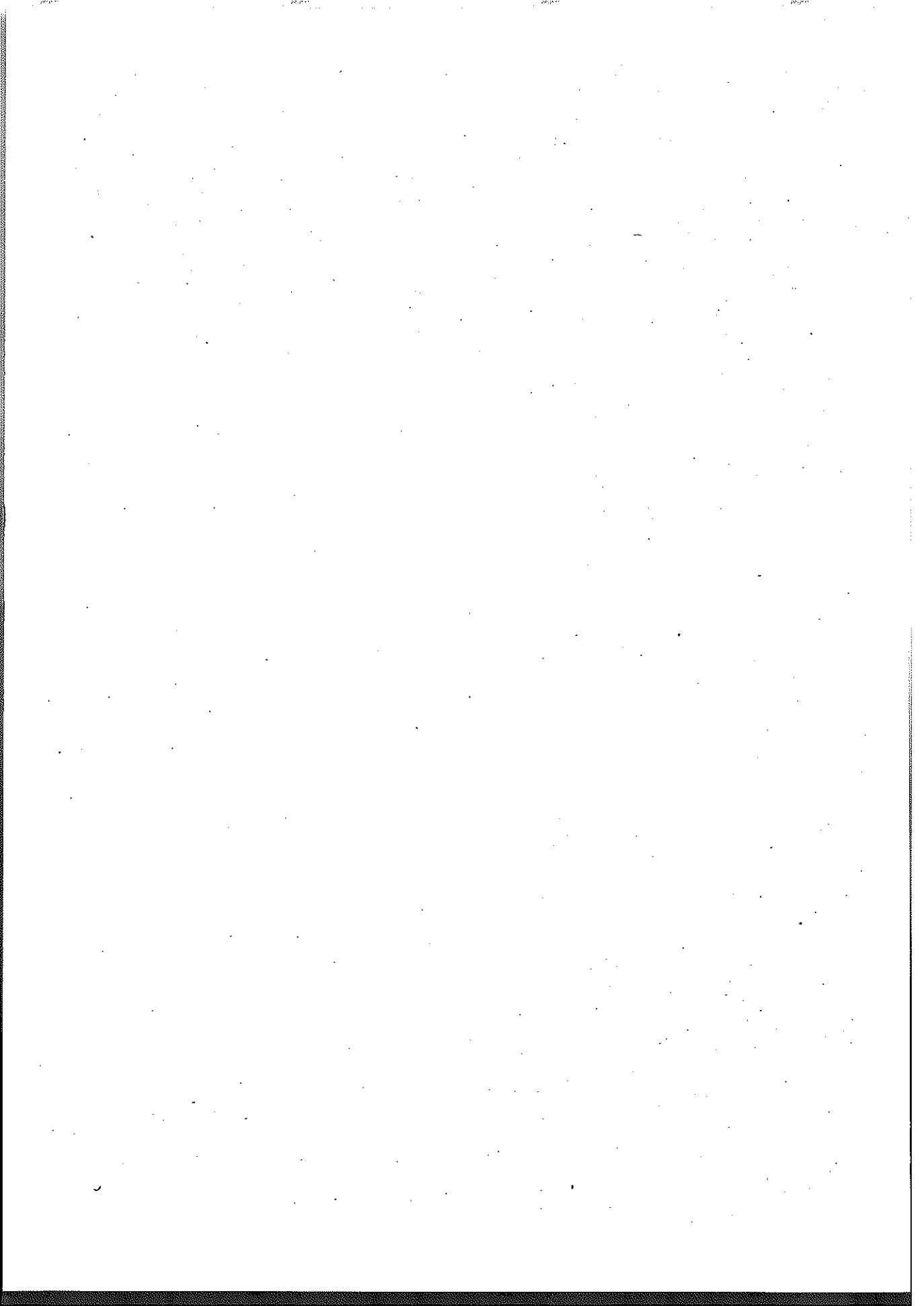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임업·산촌지원]		제4권	5
1. 임업인력육성	1) 독립가·임업후계자육성(차출)	"	7
	2) 임업기능인 훈련(공공)	"	13
	3) 임업기능인영입단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	18
2. 산림자원조성	1) 조림사업(공공)	"	27
	2) 육림사업(공공)	"	36
	3) 간벌사업(공공)	"	44
	4) 조림용 묘목생산(공공)	"	50
	5) 산림병해충 방제(공공)	"	53
3. 임업경영기반 확충및기술개발	1) 산림경영장비 지원(차출)	"	61
	2) 사유림 협업경영(공공)	"	66
	3) 임도시설(공공)	"	69
	4) 영림계획(공공)	"	74
	5)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공공)	"	78
	6) 임업협동조합 육성(공공)	"	81
	7) 임업기술 지도(공공)	"	83
	8) 임업기술개발 지원(공공)	"	86
4. 임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시설(차출)	"	93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차출)	"	98
	3) 임목생산(차출)	"	104
	4) 임산물 가공·이용시설 지원(차출)	"	108
	5) 임산물 가공·이용원자재 구입(차출)	"	113
	6) 임산물 생산·이용지원(차출)	"	117
	7) 산지가공시설 설치(차출)	"	122
	8) 임산물 유통구조개선(공공)	"	128
	9)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 지원(공공)	제4권	133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5. 환경임업육성 및 산지관광 자원화	1) 사방사업(공공)	제4권	139
	2) 산림환경기반 조성(공공)	"	145
	3) 산불방지대책(공공)	"	149
	4) 야생조수 보호(공공)	"	152
	5) 산림휴양공간 조성(공공)	"	157
	6) 산림박물관건립 및 수목원조성(공공)	"	161
	7) 산촌종합개발(공공)	"	164
[어업·어촌지원]		"	169
1. 수산자원조성	1) 내수면어업개발(자율)	"	171
	2) 수산양식사업(자율)	"	177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공공)	"	182
	4) 어항조성(공공)	"	190
	5) 수산자원조성(공공)	"	195
	6) 지도선 건조사업(공공)	"	205
2. 어업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1) 어선건조·대체사업(자율)	"	213
	2) 어선용 기계공급(자율)	"	230
	3) 내수면양식용 기자재공급(자율)	"	235
	4) 해면양식용 기자재공급(자율)	"	238
	5) 어선용 기자재생산업체 지원(공공)	"	241
	6) 수산기술개발사업(공공)	제4권	245

사업구분	사업명	권	쪽
3. 수산물생산및 유통·가공	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차출)	제4권	251
	2)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차출)	"	256
	3) 수산물 종합가공단지조성(공공)	"	261
	4) 수산물 가공업체운영자금(공공)	"	265
	5) 영어자금 지원(공공) ✓	"	271
	6)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공공)	"	274
4. 어업환경개선및 어촌관광자원 조성	1) 어촌 관광개발사업(차출)	"	287
	2) 어장 환경정화사업(공공)	"	291
	3) 어촌 종합개발사업(공공)	"	303
	4) 어민복지회관 건립(공공)	제4권	310

#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1995년 11월 14일

농림수산부장관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부문의 모든 투융자사업이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조화있게 시행되고,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의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투융자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농어촌구조개선등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이하“자율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생산자공동조직 또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투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계획추진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생산자단체·공공조합 또는 협회등에 대행시키는 사업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전국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물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생산자단체·공공조합 또는 협회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이하 “청”이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림수산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과를 말한다.
4.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부, 청, 시·도 또는 시·군에서 개별농림수산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및 사업분류) ① 이 요령의 적용대상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 도 및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림수산사업으로 하며,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대상사업 및 사업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및 사업의 분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 요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기타 농림수산사업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수산부의 1급 및 국장급 공무원
2. 청의 차장 및 기획관리관
3.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5명 이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부의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장급위원소속 실·국의 주무과장과 농림수산부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투자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수산부의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수산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① 농림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청 및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수정·보완하여 시·군 및 기타 사업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등은 사업시행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농림수산사업의 공지)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제 2 장 신규사업의 선정

제7조(신규사업의 선정제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의 선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를 통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제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투융자지원의 필요성
2. 기존 유사사업과의 비교분석
3.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4. 농업인등 관계자협의결과 또는 공청회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의 저촉여부
6. 기대효과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등이 신규사업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투자분석을 실시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단위까지 계통조직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는 중앙단위의 단체장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분석을 실시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바로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외에 새로운 농림수산투융자사업을 도입하고자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분석을 실시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제안사업에 대한 투자분석결과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 추진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규사업의 선정) ① 농림수산부의 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서로부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종합검토(청의 소관사업은 청의 총괄부서가 자체정책심의기구를 통하여 검토·조정 후 농림수산부에 제출한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융자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사업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별도의 정부방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투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의 연차별투융자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 3 장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

제10조(투융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장·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요구를 위하여 사업시행년도의 전전년 12월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계획과 사업신청요령을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의 당해년도 투융자계획
2.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지원조건·지원내용
3. 사업의 신청기간·신청기관·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청, 읍·면사무소, 농·어촌지도소, 협동조합 및 마을단위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마을단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추진의 안내) ① 사업안내기관은 시·군, 읍·면,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어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군지회를 포함한다.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로 한다.

※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 전화 : 소재지 국번 + 5959

② 사업안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을 사업안내·상담원으로 배치하여 농업인들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상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안내·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상담하여 농업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사업지원조건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수립에 대하여도 상담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조건, 지원대상자격,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등
2.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영농어후계인력

3.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능력
4. 자력담보가 부족할 경우 신용보증부대출등 담보해결방안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유사한 사업의 국내선도농어가 또는 외국사례
7. 법인결성등 생산자조직구성의 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건축허가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 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들의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자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지도소에 제출하는 사업 :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육성사업(쌀전업농육성사업을 제외한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제출하는 사업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사업, 쌀 전업농육성사업
3. 협동조합에 제출하는 사업 : 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단체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의 제출에 있어 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업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제출하는 사업의 사업신청서를 농·어촌지도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지도소장은 이를 즉시 시·군의 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의 제출시기) 자율사업의 사업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년도의 투융자예산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의 신청) ① 농업인등은 자율사업의 신청에 있어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의 투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의 연차별투융자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시·군의 사업신청서 심사의뢰) ① 시·군의 총괄부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군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사업신청서심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농·어촌지도소장 및 융자취급기관에 사업검토 또는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당해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검토 또는 신용조사를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도소에 대한 사업검토의뢰는 사업의 지원금액이 1천만원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신청서의 검토 또는 사업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취급기관에 대한 신용조사의뢰는 용자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신청자별 농림수산정책자금용자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1천만원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일괄의뢰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촌지도소의 검토의견) 농·어촌지도소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검토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검토의견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자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의견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불량(적색)거래자 및 대출부적격자명단을 일괄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대상자 우선순위등의 결정) ① 시·군의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지침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의 투·융자계획 ✓
2. 시·군농지이용계획 및 면정주생활권개발계획
3.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도소장의 사업검토의견서 ✓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의견서 ✓
6.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전년도사업신청자중 적격자현황
7. 시·도, 시·군 또는 협동조합의 자체지원계획
8. 기타 시·군전체계획과의 조화 및 사업추진결과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시·군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사업별 사업계획 및 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의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시·군농어촌발전계획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중 적격자
2. 전년도에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자중 적격자
3. 당해년도 사업신청자중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순서로 정하되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공동조직을 우선함

제19조(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 공개심의·조정) ① 시·군농어촌발전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상정한 다음년도 사업별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예산신청한도에 맞추어 각 사업별 규모를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대상지역 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군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
2. 전년도의 사업추진결과 반영되어야 할 사항
3. 시·도, 시·군의 자체기금등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지원계획
4. 협동조합의 자체사업계획
5. 소관사업부서의 검토의견서
6.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전년도사업신청자명단등

② 사업별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의한 후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제20조(사업계획·예산요구 및 공지) ① 시·군의 총괄부서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2월 28일까지 시·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00% 110/120  
60% 60%

② 시·군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내용과 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이에 대한 열람기간을 시·군홍보지나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시·군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중 탈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탈락 사유를 설명하여 주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결정내용에 대한 열람기간을 공지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도의 시·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산업부서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 산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과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농어촌발전계획의 연차별투융자계획
2.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의 연차별투융자계획
3. 시·군농지이용계획
4. 협동조합의 자체지원계획
5. 농림수산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자체지원계획
6. 전년도 사업추진평가결과 반영되어야 할 사항
7. 기타 지역적 특성등 필요한 자료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사업별 시·군별사업량 및 소요예산조정결과와 투자우선순위를 종합검토한 후 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도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공정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자체심의기구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갈음하여 심의한다.

④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  
산과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  
산부 또는 청의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내역의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요구액  
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도홍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농림수산부·청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① 농림수  
산부 또는 청의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사업계  
획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요구서를 심사하  
고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별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사업  
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별 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예산요구일  
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의 반영여부
2. 다른 실·국의 사업과의 연계여부
3. 당년도 사업점검·평가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③ 사업부서는 시·도 및 시·군별 신청사업의 배정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 즉시 시·도 및 시·군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  
다.

제23조(예산등의 가내시) ① 농림수산부 및 청의 기획예산담당부서  
는 다음년도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별 예산 및 기금지원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매년 10월15일 <sup>✓</sup>  
까지 시·도지사에게 시·군별 사업별 예산지원계획을 가내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내시된 예산지원계획에 따라 시·도비예산안을 조정한 후 시·군별로 매년 11월15일까지 가내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내시된 국고 및 시·도비예산안과 시·군비예산안에 맞추어 매년 12월15일까지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요구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포기, 이농등 이해관계인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2.28 → 2.31  
1.15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의 통보) ①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기획예산담당부서는 다음년도의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사업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별 사업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계획 및 시·도비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개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장·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요구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당년 (1월1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 보조사업 우선

1. 예산요구시 정하여진 차순위자
2. 예산요구시 정하여진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
3.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사업신청을 받아 규정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

③ 정부의 예산조정으로 탈락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사업자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다음년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우선 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확정결과의 공지) ① 시장·군수는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내용을 시·군홍보지·반상회 보게재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 관할지역의 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용자금의 지급) 용자취급기관은 지원대상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용자금을 사업자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한 후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실적확인통보서등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협동조합인 경우, 용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지침등에 사업실적의 확인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지급지시만으로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의 정산) 보조사업은 사업완료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29조(경영장부의 비치) ①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도록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는 1천5백만원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1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일지에 의거 수입·지출상황만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경영장부작성실태를 수시로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 제 4 장 공공계획추진사업

제30조(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투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공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위탁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시행 전전년 8월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및 청에 제출된 사업은 사업신청을 시·군농어촌발전계획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효과의 확산방안, 해당 지원사업의 운영준비상태 및 관리운영방안등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심사) ① 시·도지사 또는 위탁단체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심사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전년 3월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사전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요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대상자 및 지구의 선정)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지원년도 1월15일까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지구를 확정·시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확정후에도 사전심사내용을 추가로 검토·심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지구의 선정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사업을 신청한 시·도지사 및 위탁단체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업추진절차의 준용) 제1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0조 내지 제32조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사업에 대한 공지, 사업의 안내, 사업의 신청 및 검토, 심의 회의 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와 이에 대한 심사·조정, 예산의 가내시 및 확정, 용자금의 지급, 경영장부의 비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조항에 규정된 “자율사업”은 이를 “공공사업”으로 본다.

㉠ 제34조(사업예고제의 실시)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공공사업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미리 알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부터 그 추진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위탁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위탁단체장은 이를 시장·군수 또는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 반상회보 및 홍보지등을 통하여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장 평가 및 사후관리

제35조(사업추진실태의 점검·평가) ①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과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1회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보완·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1. 사업자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공동조직 및 개인사업자는 자체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매년 7월15일까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훈령)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는 그 요령에 의한 사업추진실태보고서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시·군단위의 위탁단체장 : 사업부서는 사업자가 통보한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참고하여 소관사업별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총괄부서는 사업별 점검·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매년 9월3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도단위의 위탁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도단위의 위탁단체장 : 사업부서는 시장·군수 또는 시·군단위의 위탁단체장이 통보한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참고하여 소관사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총괄부서는 사업별 점검·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위탁단체는 중앙단위의 위탁단체장이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부장관·청장 : 사업부서별로 시·도지사 또는 위탁단체장이 제출한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를 참고하여 사업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농림수산사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남제문장  
-에부국장이*

✓ 제36조(합동평가반의 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주관으로 매년 1회이상 관련기관공무원·관련단체임직원, 독농가 또는 기타 필요한 전문가로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주요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통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 또는 청은 총괄부서의 주관으로 매년 1회이상 관련사업실무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평가반을 편성하여 현지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37조(점검·평가결과의 활용) ①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의 발굴·전파 또는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연구과제로 채택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기금등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지원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의 예산·기금등의 지원을 중단 또는 감액조치할 수 있다.

제38조(지원후의 운영실태평가)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지원이 완료된 해로부터 3년간 매년 사업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1천만원미만의 사업 또는 운영자금등 경상자금을 지원한 사업은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검·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실태 평가를 시도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사후관리책임)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사후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위탁단체장이 일차적으로 사후관리책임을 진다.

제40조(사후관리사항) ① 시장·군수는 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및 차량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안내문 표준안에 따라 표지판등을 사업장의 입구·출입문 또는 현물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조·융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업이탈, 타용도사용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회수, 다른 농림수산사업의 지원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자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한 날 또는 최종지급한 날부터 6월이내에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취급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기타사유로 용자금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에 그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지도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매년도의 사업자별 농림수산사업추진현황을 전산·정보화하여 농정자료 제공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영농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훈령의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첨 부 자 료

별표 1 : 농림수산사업추진 대상사업 및 사업분류(제3조 관련)

별표 2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안내문 표준안(제40조 관련)

별지제 1호서식 : 농림수산사업지원신청서(제 1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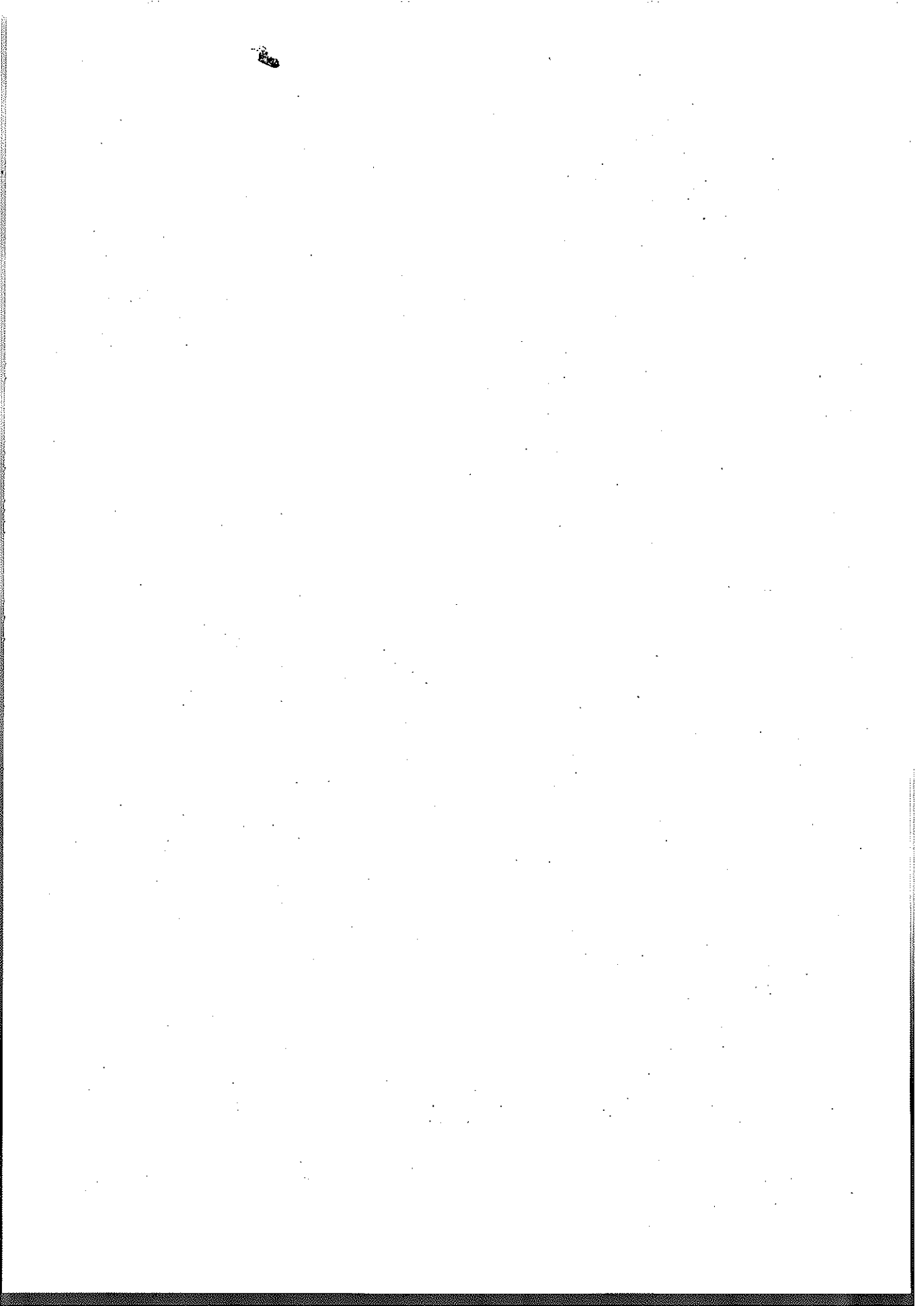
별지제 2호서식 : 농림수산정책자금융자신청자료(제 12조 관련)

별지제 3호서식 : 사업검토의견서(제 16조 관련)

별지제 4호서식 : 신용조사의견서(제 17조 관련)

별지제 5호서식 : 경영장부(제 29조 관련)

별지제 6호서식 :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서(제 35조 관련)



[별표1]

## 농림수산사업추진대상사업 및 사업분류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 합 계 ]	[ 50개 사업 ]	[ 120개 사업 ]
I. 농업·농촌구조 개선	[ 9개 사업 ]	[ 42개 사업 ]
1. 인력육성	1)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2) 전업농육성	1) 선도농업경영체육성 2) 농민학습단체육성 및 품목별 농민전문교육 3) 한국농업전문학교설립
2. 생산기반조성		1) 농지생산기반종합정비조사사업 2) 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 3)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4)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 지하수개발사업 6)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방조제개보수사업 8) 농조저수지건설사업 9) 수해복구사업 10) 배수개선사업 11) 서남해안간척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13) 발기반정비사업 14) 일반경지정리사업 15)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3. 영농규모화	1) 능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1) 농지관리위원회운영 2) 농지관리위원교육
4. 농업기계화	1)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 2)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3)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	1) 농업기계사후관리지원 2) 농업기자재생산시설 및 생산 자금지원
5. 기술개발 및 정보화		1) 농림수산물기술개발 2)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 3) 농지전산화사업 4) 농어촌개발시험연구사업 5)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 6)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7)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 센터육성 8) 지역특화 및 새기술시범사업 9) 주요농작물원원종생산 10)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6. 소득원개발 및 소득지원	1)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2) 농어촌특산물단지육성	1) 농어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2) 한계농지정비사업 3) 농공단지조성 4) 농업경영자금지원 5)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7. 생활환경개선	1)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1) 일반정주권개발사업 2) 문화마을조성사업 3)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II. 농축산물생산·유통	[ 23개 사업 ]	[ 42개 사업 ]
1. 쌀·밭작물생산	1) 벼직파재배지원 2) 감자원종망실재배 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4) 토양개량제공급 5)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1)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자금지원 2) 공동·항공방제
2. 원예·특작생산	1)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2)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3)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4)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5)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6) <u>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u> ✓ 7) 잠종 및 원잠종생산 8) 인삼생산지원	1)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지원 2)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지원 3) 과수포트대묘생산사업
3. 농산물유통·가공 및 수출		
가. 농산물수급및 판매·수출	1)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 생산자(단체)출하조절지원 2) 공동규격출하지원사업 3) 농수산물수매지원 4) 출하촉진자금지원 5) 채소유통활성화사업 6) 과실·화훼판매촉진사업 7)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p>나. 농산물유통· 가공시설</p>	<p>1) 미곡종합처리장설치및운영지원 2) 임도정공장통폐합·시설대체 3) 꽃직판장설치지원사업 4)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p>	<p>8)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지원 9) 해외시장개척사업 10) 해외시장정보조사사업 1) 농산물포장센타건설 2)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3) 농산물공판장건설 4) 농수산물물류센타건설 5) 인삼종합처리장 설치 6) 인삼종합전시장 설치 7) 화훼공판장건설지원사업 8)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p>
<p>4. 축산물생산·유통 가. 사육기반조성</p>	<p>1) 한우경쟁력제고사업 2) 젖소경쟁력제고사업 3) 돼지경쟁력제고사업 4) 닭경쟁력제고사업 5) 기타가축육성지원</p>	<p>1) 축산단지조성사업 2)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 3) 소 수급관리전산화 4) 소정액생산 및 공급 5) 축산경영여건개선 6) 가축방역 7)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사업 8) 전문종돈업육성 9) 한우쌍자생산지원 10)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11) 축산정책개발 및 교육홍보 12) 양축자금지원</p>
<p>나. 축산물수급및 유통</p>		<p>1) 가축계열화사업 2) 축산물검사 3) 도축도매시설개선 4)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p>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p>Ⅲ. 창업·산촌지원</p> <p>1. 창업인력육성</p> <p>2. 산림자원조성</p> <p>3. 창업경영기반확충 및 기술개발</p> <p>4. 임산물생산 및 유통·가공</p>	<p>[ 9 개 사업 ]</p> <p>1) 독립가·창업후계자육성</p> <p>1) 산림경영장비지원</p> <p>1) 단기소득임산물생산 및 시설</p> <p>2) 조경수·분재소재생산</p> <p>3) 임목생산</p> <p>4)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지원</p> <p>5) 임산물 가공이용원자재구입</p> <p>6) 임산물생산·이용지원</p> <p>7) 산지가공시설설치</p>	<p>5) 축산물등급판정사업</p> <p>6) 축산물가공판매시설 및 운영</p> <p>7) 학교우유급식</p> <p>[ 23 개 사업 ]</p> <p>1) 창업기능인 훈련</p> <p>2) 창업기능인영팀단 및 임대시공장비지원</p> <p>1) 조림사업</p> <p>2) 육림사업</p> <p>3) 간벌사업</p> <p>4) 조림용묘목생산</p> <p>5) 산림병해충방제</p> <p>1) 사유림협업경영</p> <p>2) 임대시설</p> <p>3) 영림계획</p> <p>4)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p> <p>5) 창업협동조합육성</p> <p>6) 창업기술지도</p> <p>7) 창업기술개발지원</p> <p>1) 임산물유통구조개선</p> <p>2)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지원</p>

사업구분	자 율 사 업	공 공 사 업
5. 환경임업육성 및 산지관광자원화		1) 사방사업 2) 산림환경기반조성 3) 산불방지대책 4) 야생조수보호 5) 산림휴양공간조성 6) 산림박물관건립 및 수목원조성 7) 산촌종합개발
IV. 어업·어촌지원	[ 9 개 사업 ]	[ 13 개 사업 ]
1. 수산자원조성	1) 내수면어업개발 2) 수산양식사업	1) 연근해어업구조조정 2) 어항조성 3) 수산자원조성 4) 지도선건조사업
2. 어업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1) 어선건조·대체사업 2) 어선용기계공급 3) 내수면양식용기자재공급 4) 해면양식용기자재공급	1) 어선용기자재생산업체지원 2) 수산기술개발사업
3. 수산물생산 및 유통·가공	1)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 수산물종합가공단지조성 2)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3) 영어자금지원 4) 수산물유통시설지원
4. 어업환경개선및 어촌관광자원 조성	1) 어촌관광개발사업	1) 어장환경정화사업 2) 어촌종합개발사업 3) 어민복지회관건립

[별표 2]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안내문 표준안

### 1. 표 준 안

#### 가. 준공전 안내문

<p>사    업    개    요</p> <p>이 사업은 199 년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1. 사업 명 : 2. 사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자    ○    ○    ○</p>	80 cm
← 110 cm →	

※ ①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사항을 표시함

② 공공계획추진사업은 사업자대신 시장·군수등 사업주관기관 표시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99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199 년 월 일

21 cm

30 cm

※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사항을 표시함

다. 스티카형 표시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99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2. 대상사업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조정이 가능함)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어선, 대형농기계 등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부착물로 표시(규격 110 cm × 80 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 cm × 21 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 4. 기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199 년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 별첨 ]

## 사업계획서

1. 현황

영농규모 (평)	소유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임차						
	계						
재배현황 (평)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설현황	개별 시설	관 수 시 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 정 : 점 적 : 스프링 : 클 러	ha	평	평	대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평	(개소 톤)	세트	(대 톤)	평	
<p>(주) : 1. 선과기( )내는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 )내는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특기사항							

"주" : 위의 현황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예시이므로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농가	○○○○								
	○○○○								
	○○○○								
단체 (조직, 회사)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부지확보 계획(건축사업의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로 표시

○ 기타

- 조직의 경우 조직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별지로 작성 첨부
- 개별농가의 경우 향후 영농계획 등 작성
- ※ 사업계획서는 사업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하여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 농림수산정책자금용자신청자료

1. 신청자

조직명		조직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계	보조 용자 자담
	사업예정지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부채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건(재산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기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부 대출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사 업 검 토 의 건 서

1. 신청자

조직명		조직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계	보조	융자
	사업예정지				자담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어경력</li> <li>○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li> <li>○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li> <li>○ 영농규모</li> </ul>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적정성</li> <li>○ 사업전망</li> </ul>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이용계획</li> <li>○ 생산 또는 원료조달</li> <li>○ 용수</li> <li>○ 전력</li> </ul>				

※ 농어촌지도소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농(어)촌지도소장

인
---

## 신 용 조 사 의 건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내용

(    년    월    일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사명	주민등록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용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 현재)	유	무	양 호	보 통	불 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 (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관련자료"를 참조하여 판단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 별지 제 5호서식 ]

경 영 장 부(I)

< 1천 5백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사업자 작성 >

(단위 : 만원)

월 일	적 요	수량	단가	수입	지출	잔액

## 경 영 장 부(Ⅱ)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와 전업농어가 작성 〉

경영장부는 사업특성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입대장

(단위 : 만원)

월 일	수 입 내 용	수 량	금 액	비 고

### (나) 지출대장

(단위 : 만원)

월 일	수 입 내 용	수 량	금 액	비 고

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중 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관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비용

(다) 경영성과

(단위 : 만원)

구 분	비 목	금 액	비 고
수 입	주 산 물		
	계 (A)		
지 출	종 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 료 구 입 비  전기료및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소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 기 계사용료 입차료(토지입차료제외)  토 지 입 차 료  시 설 장 비 등 감 가 상 각 비 농 기 계 감 가 상 각 비  차 입 금 이 자 자 본 용 역 비 기 타 비 용		
	계 (B)		
손 익	A - B		

<작성요령>

- 연말에 지출대장과 수입대장에 의하여 분석·작성하되 가계비는 제외하여야 함
- 소농구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괄이등 소농구 구입비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도 포함
- 입차료 : 연간입차료로 지불한 금액 또는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연이율)를 계상
- 토지입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입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 토지 입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시설장비등 고정자산구입(건축물포함)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 구입비는 제외)를 내용연수(뒷면)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자본용역비 : 대 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 지원금액은 제외)의 10%(연이율)를 계상

[뒷면]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구조 또는 자산명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비고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년 (3년 ~ 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건축물	20년 (15년~25년)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건축물	40년 (30년 ~ 50년)	

(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비고
○ 농업(과수는제외) 및 관련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년 (3년 ~ 5년)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 농업중 과수	16년 (12년 ~ 20년)	

※ 위 (1)(2)의 ( )내의 내용연수 범위는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로서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준함



##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서

[사업자 작성용 평가서]

(평가일시 :    년    월    일)

1. 일반사항

- 사업명 :
- 사업자 주소·성명(단체명) :
- 사업장 위치 :
- 사업비 :

(단위 : 천원)

	합 계	보 조			용 자	자부담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획 적 실						

- 사업규모 :

2. 세부평가내용

점 검 항 목	확 인 평 가 결 과
○ 사업추진실태	① 정상추진 (    ) ②부진 (    ) * 부진한 내용과 사유(②의 경우) :
○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	① 없다 (    ) ② 있다 (    ) * 변경된 내용과 사유(②의 경우) :
○ 경영장부 기록여부	① 기록하고 있다(    ) ② 기록을 않는다(    ) * 기록하지 않는사유(②의 경우) :
○ 영농(경영)수지상태	① 나아졌다(    ) ② 종전과 같다(    ) ③ 전보다 떨어졌다(    ) * 떨어진 사유(③의 경우) :
○ 시설활용상태	① 활용하고 있다(    ) ② 활용하지않고 있다(    ) * 활용하지 않는사유(②의 경우) :

3. 문제점 및 건의사항

[행정기관 및 위탁단체장 작성용 평가서 : 사업별로 작성]

(평가일시 :    년    월    일)

사업명 :

1. 일반사항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업별 (또는세부 사업별)	사업 량	사 업 비						집행액		비 고 (정상추진 또는 부진으로기재)
		국비	시·도 비	시·군 비	용자	자담	계 (A)	(B)	B/A	
계										

○ 부진사유(80% 미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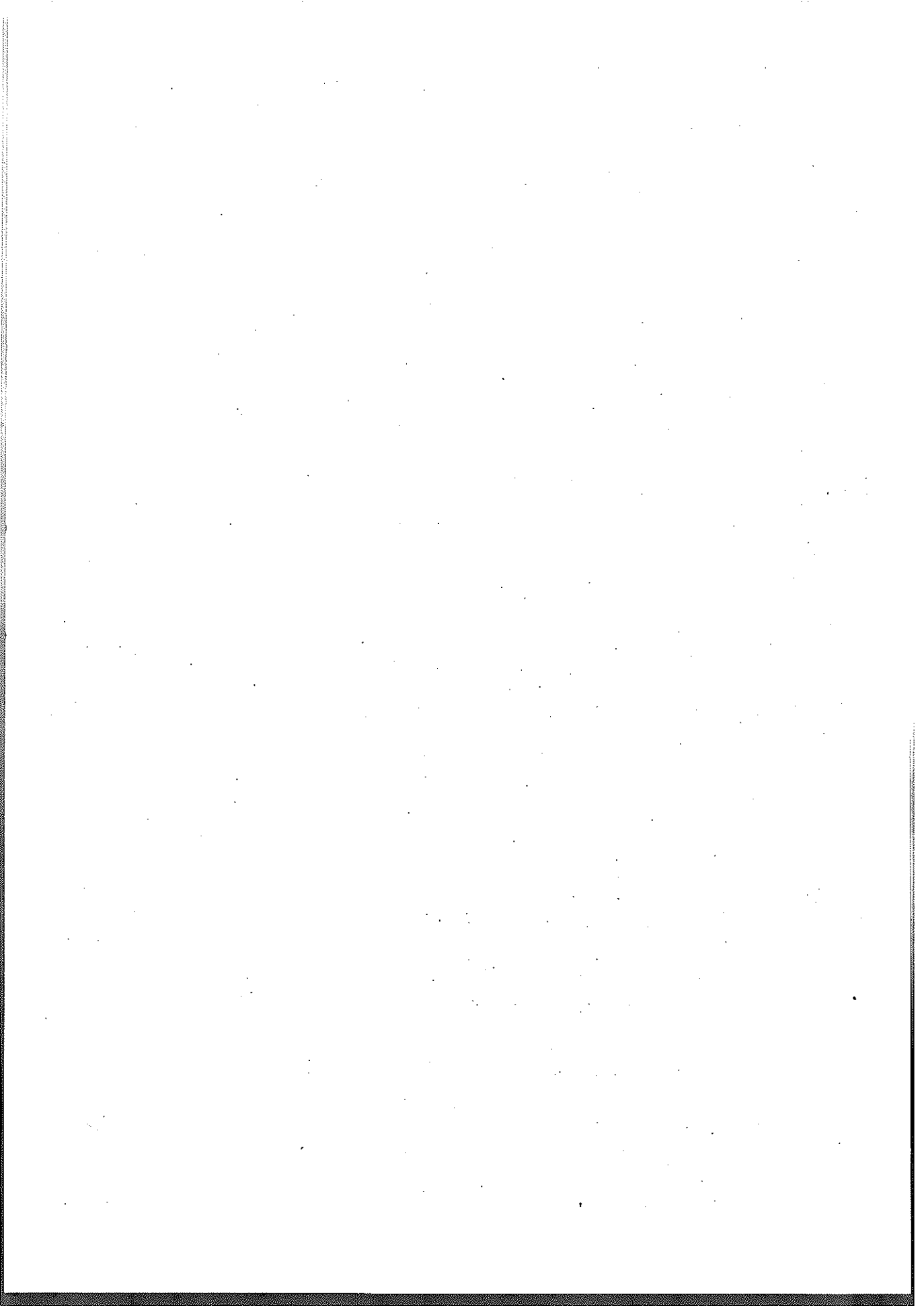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애로 및 주민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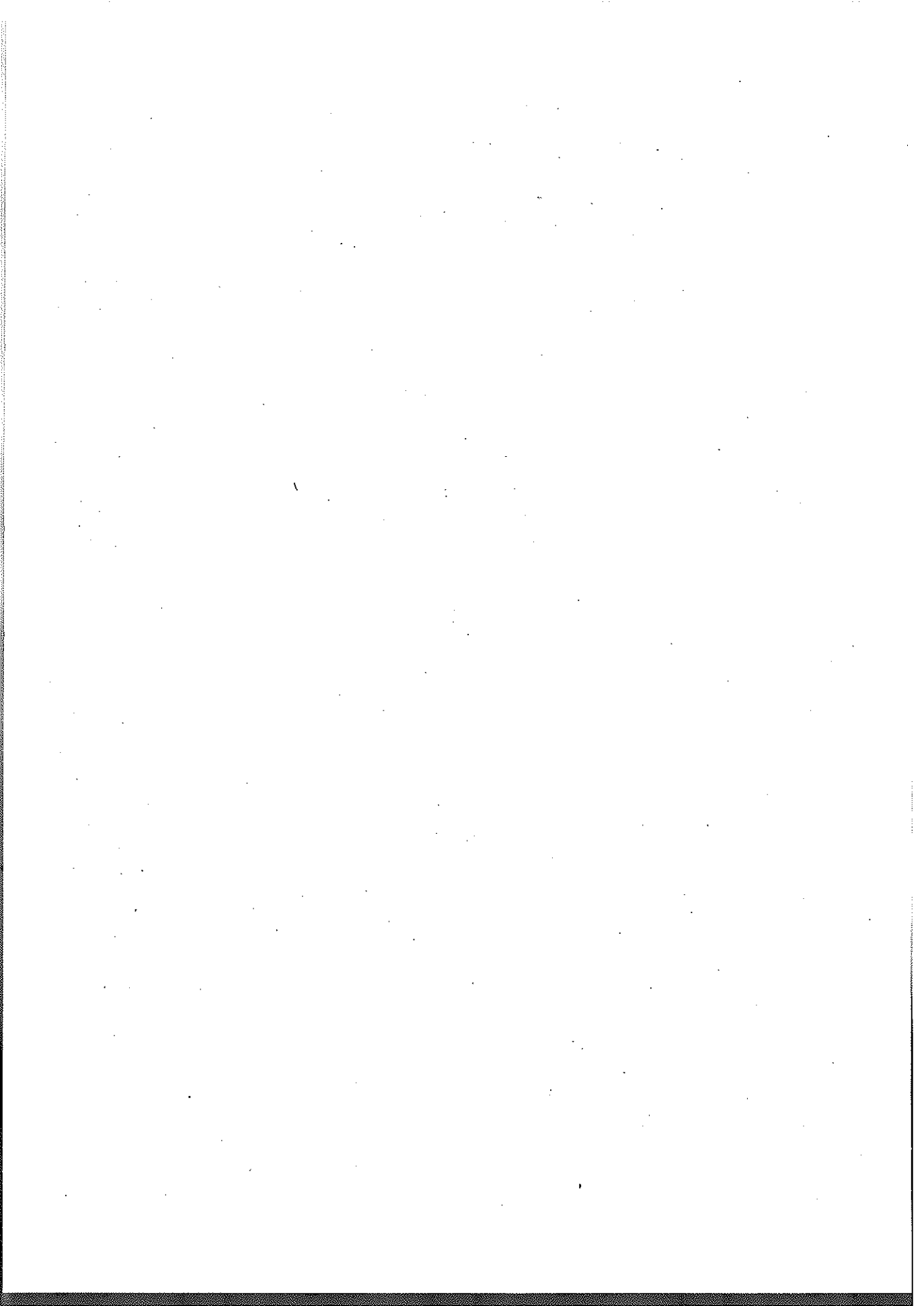
4. 전망 및 종합평가

5. 건의사항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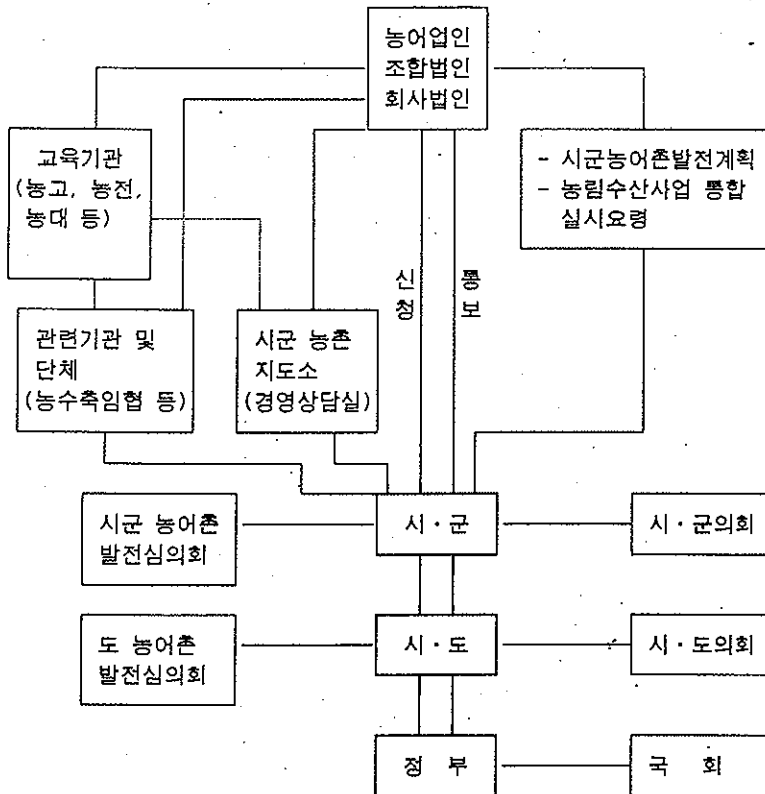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하향식농정』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정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어민을 비롯하여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므로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관료성, 경직성, 비민주성 등으로 인하여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음.
  
-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농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농정목표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두고,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1994. 6)』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농정의 목표와 농림수산투융자정책을 전면 재조정 한 농어촌발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조기 실현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0년동안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 또한 과거와는 달리 재원확보와 함께 농지, 유통, 양정, 협동조합등 농업관련법 28개를 개정 또는 제정하여 농정개혁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음
  
- 과거의 획일적인 하향식 농정운영방식으로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농정운영방식의 전환이 요청되었음.
  
- 따라서 1994년 12월에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하였음

### < 농정변화와 통합실시요령 >

구 분	농어촌발전특별 조 치 법 (1992)이전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이후 (1992~1994.6)	농어촌발전대책 이후:통합실시요령 (1994.6) 이후
· 농정기조	식량증산 농정	구조개선농정	개방농정
· 농정목표	식량증산	구조개선	· 구조개선 · 국제경쟁력강화
· 관련 법과 제도	농업 보호조치	개방대비 농업보호	개방하에서 경쟁체제
· 농정운영주체	정부	정부	정부, 생산자 단체, 민간

### < 자치시대의 농정체계(자율농정방식) >



## 2. 주요특징

### <기본방향>

- 농정의 총체적모습제시로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농어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 농정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민불편사항 해소
- 투융자사업추진평가의 강화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가. 농림수산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수산청의 모든 사업을 종합한 안내책자를 읍·면 및 시·군 민원실,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 농·수·축·임 협동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민의 사업선택에서부터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등에 까지 안내·상담·지도

### 나. 농림수산사업의 통합추진

- 농림수산사업을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총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신청을 개별사업별로 추진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어민의 자조역량제고

-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지원조건, 지원절차등을 종합제시하여 농어민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자율적인 선택과 계획으로 사업지원을 신청하고 자치단체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지역실정에 밝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라. 사업시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요령의 공지로 농어민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함
  -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을 공개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 사업대상자선정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공개
-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공개

## 마. 경영장부의 기록·유지

- 농어민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바. 점검·평가 강화

-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하였던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농어민, 생산자조직, 시·군, 시·도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군, 시·도 또는 농림수산부·청별로 합동평가반도 운영함.
- 이러한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예산·기금의 확대지원 또는 지원축소등 재정지원을 조절하므로써 투융자 효과를 극대화함.

### 3. 통합실시요령의 개정·보완

#### 가. 개정방향

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일선기관·단체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농어민의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훈령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

#### 나. 주요훈령 개정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1. 훈령체제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의 중복·누락 또는 현실성이 없거나 조문체계가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li> <li>제 1장 총칙</li> <li>제 2장 신규사업의 사전 조사와 기획</li> <li>제 3장 농림수산투융자 사업의 신청과 대상자선정 및평가</li> <li>제 4장 농어민자율추진 사업의 신청과 대상자선정 및 평가</li> <li>제 5장 공공계획추진사업의 투융자사업신청과 대상선정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누락사항 및 현실성없는 규정의 수정·보완,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li> <li>(종전) 5장 47조</li> <li>(개선) 5장 40조</li> <li>제 1장 총칙</li> <li>제 2장 신규사업의 선정</li> <li>제 3장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li> <li>제 4장 공공계획추진사업</li> <li>제 5장 평가및 사후관리</li> </ul>

구 분	종 전	개 정
2. 보조·융자내용 공시규정의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급시마다 사업별 대상자별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를 반상회 보등에 공지</li> <li>→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복잡한 절차로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과의 상충도 우려됨</li> <li>(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에 맞지않는 당해 규정삭제</li> </ul>
3. 신규사업 선정절차의 체계화(제7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은 사전조사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의 선정제한, 선정요구, 선정등 선정절차를 체계화</li> </ul>
4. 투융자계획 및 사업 신청요령공고방법 보완(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읍·면, 지도소, 협동조합계시판계시 및 반상회보등에 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민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단위계시판계시”추가</li> </ul>
5. 사업안내기관 추가지정(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읍·면, 농어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를 안내기관으로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협동조합, 농지개발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지사를 추가하여 지정</li> </ul>

구 분	종 전	개 정
<p>6. 사업신청과 검토 및 신용조사 방법개선 (제 12조, 제 15조~제 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및 지도소의 검토의견서 제출의무화 → 업무과중으로 사업 검토의견서제출 형식화 초래</li> <li>○ 융자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융자신청자료의 제출의무화 및 신용조사 실시 → 업무과중으로 적기검토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1천만원이상 사업신청자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업검토의뢰</li> <li>○ 사업검토의견서 서식의 신규제정으로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의 통일 및 신속화 도모</li> <li>○ 융자금액 1천만원이상 사업신청자에 한해 융자신청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별사업자별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 의견을 회보 - 1천만원미만 사업자는 일괄하여 신용조회하고 대출부적격자명단만 회보</li> </ul>
<p>7.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결과 공지 방법 개선 (제 25조, 제 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 결과를 공고하고, 시·군 및 읍·면 홍보지, 반상회보, 농·수·축·임협자체소식지등에 게재하여 홍보 → 대상자 공고곤란 및 자체홍보지, 자체소식지등이 없는 단체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규정을 삭제하고, 그대신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시·군홍보지, 반상회보 게재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유연성 부여</li> </ul>

구 분	종 전	개 정
<p>8. 용자금 지급규정의 보완(제27조)</p>	<p>○ 사업자가 용자를 신청하면 사업자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지급</p> <p>→ 운전자금, 소액시설 자금 또는 공공기관사업의 경우등 사전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p>	<p>○ 예외적으로 사업주관 기관의 지급지시만으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금인 경우</li> <li>-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협동조합이 사업자인 경우</li> <li>- 용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 사업지침등에 사업실적 확인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등</li> </ul>
<p>9. 경영장부 작성기준 개선(제29조)</p>	<p>○ 1천5백만원이상 사업자에 대해 경영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어등 내용이 어려워 대부분의 농어민이 작성 기피</p>	<p>○ 농어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보완</p> <p>○ 3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성과를 포함한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1천5백만원이상~3천만원미만 사업자는 단순한 금전출납부 형식의 경영일지만 작성하도록 함</p>

구 분	종 전	개 정
<p>10. 예산가내시등 예산 관련 규정 보완 (제13조, 제20~제25조, 제31~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사업에 대한 자율사업 준용규정이 모호하여 예산가내시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 야기</li> <li>○ 예산 가내시등은 중앙은 시·도별로 내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별로 내시하도록 규정 → 중앙에서 시·군까지 예산을 통지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과 상충</li> <li>○ 사업의 추진일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 및 사업검토 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공공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li> <li>○ 예산가내시등은 시·군까지 내시하도록 하여 <u>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과 부합되도록 함</u></li> <li>○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일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사업자) : 1.15 → <u>1.31</u></li> <li>- 시장·군수 → 시·도지사 : 2.15 → <u>2.28</u></li> <li>- 시·도지사 → 장관 : 3.15 → <u>3.31</u></li> <li>- 지원대상자 확정 : 1.20 → 1.15</li> </ul> </li> </ul>
<p>11. 공공사업의 신청방법 보완(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시전전년 8.31까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사전심사 후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 → 사업성격상 신청 절차가 부적합한 사업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된 신청절차의 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li> </ul>

## 다. 사업시행지침의 개편

### (1) 개편방향

- 지침을 농어민 및 일선기관·단체에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개편
- 사업시행지침의 구성체제를 통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세분·중복되어있는 유사사업 또는 연계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의 통합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 (2) 통합실시요령 구성체제

		종 전	개 정
총 괄 편	제 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실시요령(훈령)</li> <li>○ 해설</li> <li>○ 참고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실시요령(훈령)</li> <li>○ 통합실시요령 해설</li> <li>○ 참고자료</li> </ul>
사 업	제 2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예농수산인력육성</li> <li>2. 농업생산기반정비</li> <li>3. 경영규모 확대</li> <li>4. 농업기계화</li> </ol>	<input type="checkbox"/> 농업·농촌구조개선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육성 2. 생산기반조성</li> <li>3. 영농규모화 4. 농업기계화</li> <li>5. 기술개발 및 정보화</li> <li>6. 소득원개발 7. 생활환경개선</li> </ol>
	제 3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품목별 시설현대화</li> <li>6. 기술보급·개발</li> </ol>	<input type="checkbox"/> 농축산물 생산·유통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쌀·밭작물생산</li> <li>2. 원예·특작생산</li> <li>3. 농산물 유통·가공·수출</li> <li>4. 축산물 생산·유통</li> </ol>
지 침	제 4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li> <li>8. 소득원다양화 및 생활환경개선</li> <li>9. 임업·산촌지원사업</li> <li>10. 어업·어촌지원사업</li> </ol>	<input type="checkbox"/> 임업·어업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업·산촌지원</li> <li>2. 어업·어촌지원</li> </ol>

### (3) 대상사업의 통폐합

#### 가) 대상사업수의 조정

종전(275개 사업)	⇒	개편(170개 사업)
자율사업 70 공공사업 205		자율사업 50 (신규 4) 공공사업 120(신규 12)

#### 나) 주요 개편내용

- 사업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사업이나 연계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통폐합(각종 축산사업등 45개사업 축소)
- 자율사업중 투자수익성이 없어 농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하나 정책 목적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전환 (조림사업등 9개사업)
-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의 추가(인삼생산지원사업등 16개 사업)
- '95완료사업, 비예산사업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등 75개사업)



## 4.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 가. 총 칙

#### (1) 목적(제 1조)

농림수산부문의 모든 투융자사업이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조화있게 시행되고, 농업인들의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투융자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농어촌구조개선 등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대상사업 및 사업분류

##### (가) 사업분류

#####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50개)

- 농업인등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정부의 투융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그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사업

- 주체
  - 농어업인등
  - 생산자공동조직, 마을공동조직, 기계화영농단, 작목반등
  - 생산자단체 : 농수축임·인삼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공공계획추진사업(120개)

- 종류
  -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이 대행하는 사업
  - 정부의 전국적인 배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공공조합등이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및 사업분류의 변경은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나)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지침

○ 대상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도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농림수산사업으로 함

○ 대상사업은 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시행지침 마련(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율	공공	계
1. 농업·농촌구조개선	○ 인력육성	2	3	5
	○ 생산기반조성	-	16	16
	○ 영농규모화	1	2	3
	○ 농업기계화	3	2	5
	○ 기술개발 및 정보화	-	10	10
	○ 소득원개발및소득지원	2	5	7
	○ 생활환경개선	1	4	5
	계	9	42	51
2. 농축산물생산·유통	○ 쌀·밭작물생산	5	2	7
	○ 원예·특작생산	8	3	11
	○ 농산물유통·가공·수출	5	18	23
	○ 축산물 생산·유통	5	19	24
	계	23	42	65
3. 임업·어업	○ 임업·산촌지원	9	23	32
	○ 어업·어촌지원	9	13	22
	계	18	36	54
합	계	50	120	170

### (3)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의 운영(제4조)

구 분	위 원 회	실 무 위 원 회
위원장	농림수산부 차관	농림수산부 감사관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부 1급 및 국장급</li> <li>○ 청의 차장 및 기획관리관</li> <li>○ 5명 이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자(임기 2년)</li> </ul>	국장급위원소속실·국 주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담당관

#### ○ 기능

- 통합실시요령개정 및 사업시행지침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농림수산사업평가
- 기타 농림수산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신규사업의 선정(제 7조~제 9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신규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투자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
  -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후 시·도지사를 거쳐 제안
-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등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선정제안
  - 농협등 계통조직화된 생산자단체는 중앙단위단체장이 투자분석을 실시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
-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지사 또는 생산자단체의 선정제안 또는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투자분석을 실시한 후 11월 30일까지 총괄부서에 선정요구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의 선정요구사항을 종합검토후 지침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
  - 청은 자체정책심의기구를 통해 검토·조정한 후 농림수산부에 제출
- 재해대책등 긴급한 사업이나 별도방침에 의한 사업외에는 투융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음

## 다. 농업인등자율추진사업

### (1) 추진개요

시 기	주 체	시 기
○ 투융자계획 및 사업 신청 요청공고	시장·군수	<u>전전년12월중(20일이상)</u> ✓
○ 사업신청 (읍·면, 지도소, 협동 조합등)	농업인등, 생산자단체 (안내기관의 안내·상담)	전년 1.31까지
○ 사업신청서심사및 시·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시장·군수 (농·어촌지도소, 용자취 급기관협조)	전년 2. 28까지
○ 시·군별 사업계획심사 및 중앙에 예산요구	시·도지사(총괄부서)	전년 3. 31까지
○ 중앙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심사 및 예산요구	농림수산부 및 청의 기획 예산담당관(사업부서협 조)	전년 5. 31까지
○ 예산가내시(기금포함)	농림수산부, 청,시·도	중앙 : 전년 <u>10. 15</u> 까지 시·도 : 전년 <u>11. 15</u> 까지
○ 예산배정계획확정통보 (기금포함)	"	중 앙 : <u>국회통과즉시</u> 시·도 : 전년 12. 31까지
○ 지원대상자확정통보	시장·군수	당년 <u>1. 15</u> 까지
○ 사업시행	지원대상자	당년도중
○ 사업추진실태평가	사업자, 시장·군수,시·도 지사, 위탁단체, 농림수 산부장관·청장	매년 1회 (필요시 수시 실시)
○ 사후관리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시장·군수)	<u>자금지원이 완료된 해로부터 3년간 평가</u>

## (2) 추진단계별 내용

### (가) 투융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제 10조)

- 공고사항 : 사업시행년도의 투융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 공고시기 : 전전년 12월중 20일이상 공고
- 공고방법 : 시·군청, 읍·면사무소, 농·어촌지도소, 협동조합 및 마을단위게시판게시와 반상회보등에 게재
- 기 타 : 공고내용을 읍·면장을 통해 마을단위까지 문서통보

### (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안내(제 11조)

#### ○ 안내기관

시·군, 읍·면, 농·어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출장소, 농협·수협·축협·임협·인삼협 및 중앙회군지부,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지사

#### ○ 안내·상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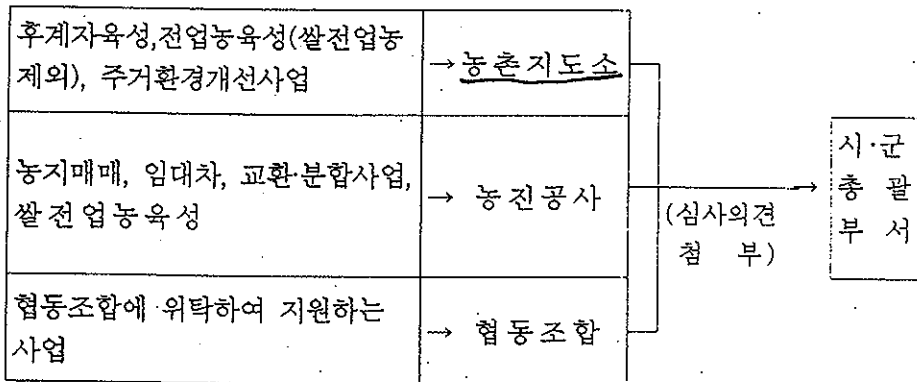
- 농업인들이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상담
- 사업선택후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까지도 상담·지도

#### ○ 안내·상담원의 주요 숙지사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연차별 투융자계획 및 통합실시요령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조건, 지원대상자격,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등
- 융자금 대출제도
- 자력담보가 부족할 경우 신용보증부대출등 담보해결방안
-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 유사한 사업의 성공사례
- 법인결성등 생산자조직구성의 방법 및 절차
- 농지전용·건축허가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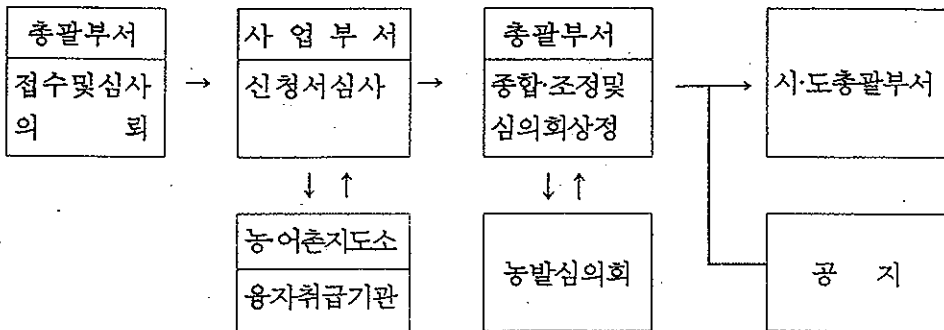
(다) 사업신청(제 12조)

- 제출기한 : 연중제출할 수 있으나 다음년도에 사업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1. 31까지 제출
- 신청대상 : 자율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생산자공동조직, 농업인등
- 제출기관 : -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 총괄부서(산업과등 주무과)에 제출  
 · 농·어촌지도소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이송  
 - 다음사업은 농·어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협동조합에 제출



- 대상사업 : 통합실시요령의 대상사업으로서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 시·군 농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의 신청은 그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입증
  -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농발계획의 연차별 투융자계획 변경
- 신청방법 : 요령 및 지침에 정하는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 융자신청자료 : 융자금액 1천만원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라) 시·군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제 15조 ~ 제 20조)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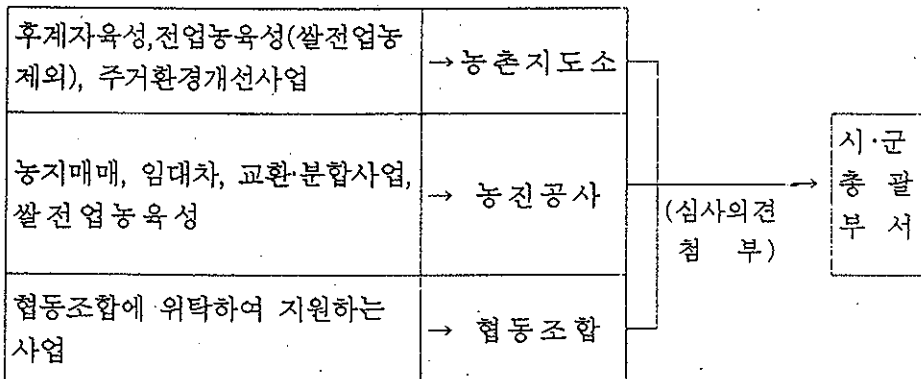
- 총괄부서 : 신청서 접수즉시 사업부서에 심사의뢰
- 사업부서 : 심사의뢰를 받는즉시 농·어촌지도소 및 용자취급기관에 사업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 :
  - 사업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심의
  - 농어촌발전심의회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2. 28까지 시·도 총괄부서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내용과 사업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지원예정금액, 열람기간등을 시·군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등을 통해 공지
    - 탈락자가 요청시 탈락사유 설명

<사업대상자선정 우선순위결정원칙(제18조) >

- 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중 적격자 ✓
  - ② 전년도에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자중 적격자 ✓
  - ③ 당해년도 사업신청자중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순서로 정하되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공동조직 우선
- ※ 필요한 경우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다) 사업신청(제 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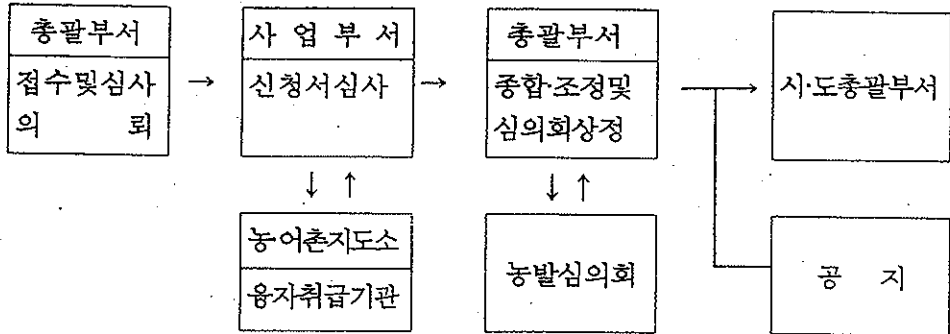
- 제출기한 : 연중제출할 수 있으나 다음년도에 사업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1. 31까지 제출
- 신청대상 : 자율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생산자공동조직, 농업인등
- 제출기관 :
  -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 총괄부서(산업과등 주무과)에 제출
  - 농어촌지도소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이송
  - 다음사업은 농어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협동조합에 제출



- 대상사업 : 통합실시요령의 대상사업으로서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 시·군 농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의 신청은 그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입증
  -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농발계획의 연차별 투융자계획 변경
- 신청방법 : 요령 및 지침에 정하는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 융자신청자료 : 융자금액 1천만원이상의 사업신청자만 첨부



(라) 시·군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제 15조 ~ 제 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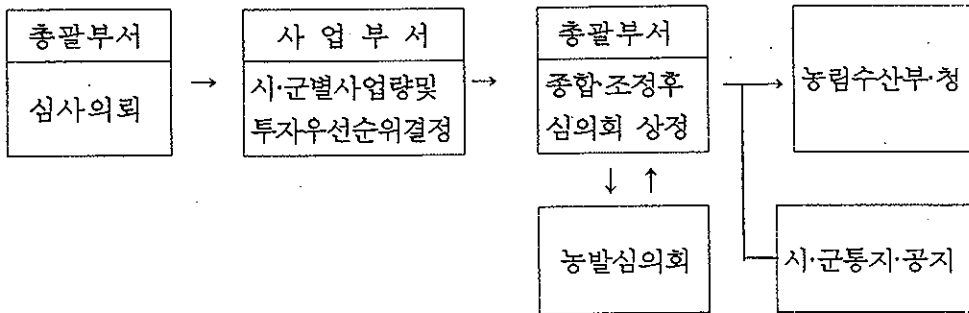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총괄부서 : 신청서 접수즉시 사업부서에 심사의뢰
- 사업부서 : 심사의뢰를 받는즉시 농·어촌지도소 및 융자취급기관에 사업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 :
  - 사업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심의
  - 농어촌발전심의회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2. 28까지 시·도 총괄부서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내용과 사업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지원예정금액, 열람기간등을 시·군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등을 통해 공지
    - 탈락자가 요청시 탈락사유 설명

<사업대상자선정 우선순위결정원칙(제18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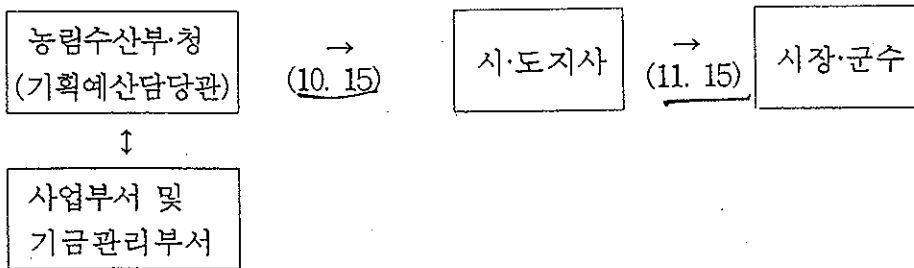
- 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중 적격자
  - ② 전년도에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자중 적격자
  - ③ 당해년도 사업신청자중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순서로 정하되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공동조직 우선
- ※ 필요한 경우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마) 시·도의 시·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제21조)



- 총괄부서 : 사업부서에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의뢰
- 사업부서 :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조정과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 : - 사업부서의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조정 결과와 투자우선순위를 종합검토후 심의회에 상정·심의  
 ※ 특별시 및 광역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갈음하여 심의  
 -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을 조정,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3.31까지 농림수산부 또는 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및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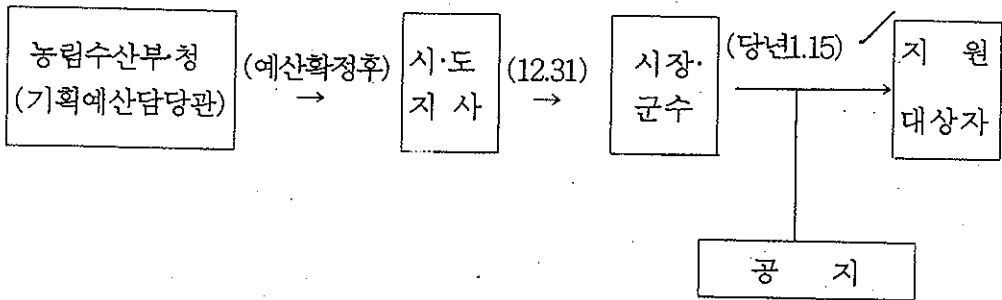
(바) 예산등의 가내시(제23조)



- 농림수산부 및 청 : 기획예산담당부서는 다음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및 기금지원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10.15까지 시·도지사에게 시·군별 사업별 예산 지원계획을 가내시

-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및 청의 예산지원계획에 따라 시·도비 예산안을 조정하여 11. 15까지 시장·군수에게 가내시
- 시장·군수 : 가내시된 국고 및 시·도비 예산안에 따라 시·군비 예산안을 12. 15까지 사업별 지원계획(안) 수립 및 예산요구시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안) 작성

(사) 예산배정계획통보 및 지원대상자 확정(제24조~제26조)



- 농림수산부 및 청 : 기획예산담당부서는 다음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사업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 또는 청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계획 및 시·도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여 12.31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 : - 자체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요구시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당년 1.1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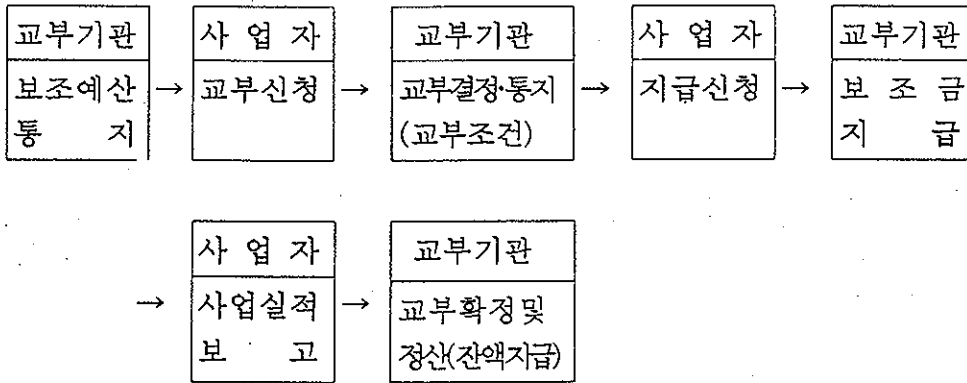
<우선순위 변경사유 발생시 순위조정 원칙>

- ① 예산요구시 정하여진 차순위자
  - ② 예산요구시 정하여진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기존사업신청자중 적격자
  - ③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새로신청을 받아 선정
- ※ '96년도 지원대상자 확정은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이상 종전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가 존중되어야 함

-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내용을 시·군 홍보지, 반상회보 게재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공지)

(아) 사업추진(제27조, 제29조)

○ 보조사업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사업집행



○ 용자사업 :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용자신청시 사업자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하고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실적확인 통지서등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지급지시만으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용자금의 지급이 가능

- 운전자금인 경우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협동조합인 경우~~
- 용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시행지침등에 사업실적확인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경우

○ 경영장부비치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개선(1,500만원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비치의무화 대상제외)

- 1,500 ~ 3,000만원미만 지원사업자는 경영일지에 수입·지출상황만 기록
- 3,000만원이상 지원사업자는 수입·지출기록 및 경영성과(손익상황)까지 분석

## 라. 공공계획추진사업

### (1) 추진개요

추진단계별	주체	시기
○ 사업신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탁 단체장)	투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전전년 8. 31까지
○ 사업신청서 사전심사 및 농림수산부·청에 제출	시·도지사, 위탁단체장	전년 3. 31까지
○ 사업검토 및 예산요구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전년 5. 31까지
○ 지원대상자·지구선정	"	당년 1. 15까지
○ 사업시행	투융자지원을 받은자	당해년도중
○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자	
○ 사 후 관 리	농림수산부장관, 청장 (시장·군수)	자금지원이 완료된 해로부터 3년간 평가

## (2) 추진단계별 내용

### (가) 사업신청(제30조)

- 투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실시 전전년 8.31까지 신청
  - 신청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
  - 신청서 첨부자료 :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해당지원사업의 운영준비상태 및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농림수산부 및 청에 제출된 사업은 이를 사업신청한 것으로 간주
- 사업특성상 8. 31까지 신청하는 시행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예산반영(제31조)

- 시·도지사, 위탁단체장 : 사업신청내용을 사전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전년 3. 31까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청장 : 사업신청서 사전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요구에 반영

### (다) 지원대상자 및 지구선정(제 32조)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은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년 1. 15일까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지구 확정 시달

### (라) 사업추진절차의 준용 및 사업예고제 실시(제33조, 제34조)

- 사업의 공지, 안내, 신청 및 검토, 심의회 심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예산요구서 심사·조정, 예산가내시 및 확정, 융자금지급, 경영장부비치등에 관하여 공공사업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율사업 절차를 준용
- 농업인들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 공공투융자사업에 대한 예고제 실시

## 마.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 (1) 평가실시(제35조)

- 사업시행자, 각급기관은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보완·개선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평가함

사업자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평가후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위탁단체장에게 7. 15까지 결과 통보 - 애로사항 해결방안강구등 경영개선노력
시장·군수 및 위탁단체장	○ 소관사업부서별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농산분야 : 산업과, 축산분야 : 축산과, 산림분야 : 산림과, 수산분야 : 수산과등 ○ 총괄부서에서 종합분석하여 9. 30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 및 위탁단체장	○ 소관사업부서별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총괄부서에서 종합분석하여 10.31까지 농림수산부 및 청에 통보
농림수산부장관·청장	○ 소관사업부서별로 점검·평가하여 문제점 개선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평가결과 반영

### ○ 합동평가반에 의한 점검·평가(제36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련기관, 공무원, 관련단체임직원등으로 합동평가반을 구성 주요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통기관에 보고
- 농림수산부·청은 관련사업 실무자로 구성하는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평가

<합동평가반의 운영>

- 시·도, 시·군 : 총괄부서주관 매년 1회이상 평가
  - 구 성 : 관련기관공무원, 관련단체임직원, 독능가, 전문가
  - 대상사업 : 주요추진사업(당년 추진사업 또는 전년도 완공된사업)
  - 내 용 : 사업진행의 적정성,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경영실태, 다른사업과의 연계등 종합적인 사항
- 농림수산부·청 : 총괄부서주관 매년 1회이상 평가
  - 구 성 : 관련사업 실무공무원으로 구성
  - 대상사업 : 주요추진사업(완공사업중심으로 3~5개사업 중점평가 분석)

(2) 점검·평가결과의 활용(제37조)

- 시·도, 시·군, 농림수산부, 각청은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포상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단체 및 사업자 포상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부진,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제외, 예산·기금감액조치, 우수한 시·군은 예산·기금을 우선 증액 지원



### (3) 사후관리(제 38조 ~ 제 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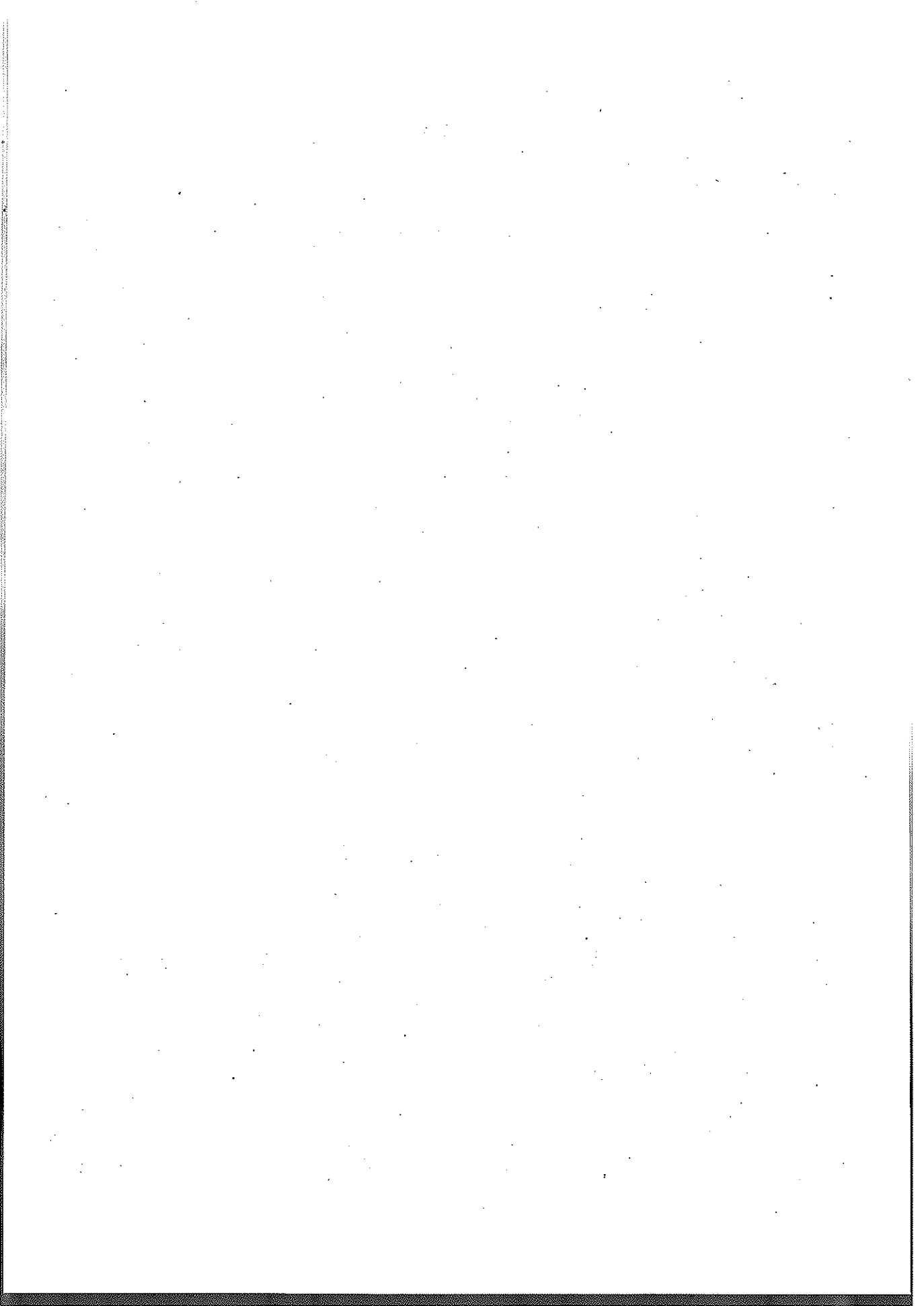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규정할 경우 제외)
  -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위탁단체장이 일차적 책임을 짐
  
-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후 계속 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며, 타용도 사용방지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강구
  
- 자금지원 완료후 3년간 사업운영실태 점검·평가
  - 지원금액 1천만원미만 또는 운영자금등 경상자금지원사업은 제외가능
  
- 용자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날 또는 최종지급일부터 6월 이내에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 회수여부를 검토 하도록 조치

#### <경 과 조 치 >

훈령개정으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시행함

##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담당업무 현황 >

	총괄부서	사업부서
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계획 및 사업신청 요령공고 및 공지(전전년 12월중)</li> <li>○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부서에 심사의뢰</li> <li>○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종합·조정하여 농발심의회에 상정</li> <li>○ 농발심의회심의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제출(전년 2/28까지) 및 공지</li> <li>○ 예산가내시에 따라 사업별 대상자별 지원계획(안)수립 (전년 12.15까지)</li> <li>○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사업별 대상자별 지원계획 확정 총괄(당년 1.15까지) 및 결과 공지</li> <li>○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결과 보고 및 합동평가반 구성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도소 및 용자취급기관에 사업 검토의뢰 및 신용조회</li> <li>○ 신청서 심사 및 대상자 우선순위(안)결정</li> <li>○ 소관사업의 대상자별 지원계획(안) 수립</li> <li>○ 소관사업의 대상자별 지원계획 확정 (지원대상자에게 통지)</li> <li>○ 소관사업의 추진실태 점검·평가 실시</li> </ul>
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접수 및 사업부서에 심사의뢰</li> <li>○ 사업부서의 심사결과를 종합검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발심의회에 상정</li> <li>-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신부 또는 청에 제출 (전년 3.31까지)</li> <li>- 시·군통보 및 공지</li> </ul> </li> <li>○ 시·군별 예산가내시(전년 11.15까지)</li> <li>○ 시·군별 예산배정계획 통보(전년 12.31까지)</li> <li>○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결과 종합보고</li> <li>○ 합동평가반 구성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사업의 시·군별 사업계획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투자우선순위 조정</li> </ul> </li> <li>○ 소관사업의 시·군별 예산가내시안 작성제출</li> <li>○ 소관사업의 시·군별 예산배정계획 작성제출</li> <li>○ 소관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 실시</li> </ul>
농 림 수 산 부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접수 및 사업부서에 심사의뢰(예산부서)</li> <li>○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종합심사조정 및 예산요구(예산부서)</li> <li>○ 예산가내시(전년 10.15까지)</li> <li>○ 예산배정계획확정통보(정부예산확정후)</li> <li>○ 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종합 및 합동평가반 구성운영(평가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사업의 시·도별 사업계획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및 시·군별 사업량과 소요예산 조정</li> </ul> </li> <li>○ 소관사업의 예산배분계획안 작성</li> <li>○ 소관사업의 추진실태 점검·평가 실시</li> </ul>



### 3.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 농림수산사업추진 흐름도

참고자료 2 : 농어촌 투융자계획

참고자료 3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안내

참고자료 4 : 농업용시설 농지전용허가·신고안내

참고자료 5 : 농업용시설 건축허가·신고안내



# 신 호 립 도

	사 업 시. 행 년 도 ( 당 해 년 )	사 후 관 리 ( 후 년 )
0 ~ 12월	1 ~ 12월	1 ~ 12월
	사업시행, 경영장부기록, 점검·평가	사후관리
대상자 확정 통보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li> <li>- 연1회이상 자체평가 실시</li> <li>⇒ 읍·면 또는 시·군에 결과통보</li> </ul>	사후관리
1원계획마련	대상자확정	사후관리
국고, 도, 시군비 예산에 맞추어 사업별, 대상자 별지원계획(안) 마련	지침·예산시달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과(실국) 별로 연 1회 이상 점검평가</li> </ul>
예산(안)통보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평가반운영</li> <li>⇒ 우수사례 발굴 전파·포상 및 보완 개선</li> </ul>
정및배정	지침·예산시달	
수편성(안) 0.15)	(예산확정시)	
부지침작성		
	사업추진 실태 점검· 평가	

# 농 어 촌 투 용 자 계 획

## I. 42조원 조기 투용자 계획

### 1. 투용자 실적과 '96~'98계획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당초 42조원 투자계획('92~2001)을 '98년까지 3년 앞당겨 투자키로 함에 따른 투용자계획 규모 조정

→ 42조 계획중 중앙지원분(35조4천억원)을 대상으로 조정

- '92~'94간 투자실적 : 10조 3,488억원
- '95 투자실적 : 4조 7,626억원
- '96 투자계획 : 5조 6,725억원
- '97~'98간 계획 : 14조 6,138억원

} 15조 1,114억원  
} 20조 2,863억원

※ 당초 42조 계획 : 중앙 35조원, 지방비 4조원, 자부담 3조원

#### < 중앙정부 투용자실적 및 계획 >

(단위:십억원)

	총규모	'92~'94	'95	'96(안)	'97~'98전망
국 고	32,638	9,189	4,263	5,172	14,014
촉발기금	2,760	1,160	500	500	600
계	35,398	10,349	4,763	5,672	14,614

※ 당초 투자계획('92~2001년)보다 11조원 수준의 투자가 앞당겨짐

□ WTO체제의 개방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강화 사업에 중점지원

	'92~'98간	'92~'95간	'96(안)
○ 경쟁력강화	31조 8,947억원(90%)	13조 7,278(91)	5조 511(89)
○ 농어촌활력증대	3조 5,030억원(10%)	1조 3,836(9)	6,214(11)
계	35조 3,977억원(100%)	15조 1,114(100)	5조6,725(100)

## 2. '96투융자 계획(안)

□ '9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5조 2천억원을 확보하므로써 42조 조기집행계획을 뒷받침

- 42조예산(국고 투융자) : ('95) 42,626억원 → ('96) 51,725(21.3%증)

(단위 : 억원)

사 업 명	'92 ~ '94			'95예산	'96예산 (안)	'96/'95 (%)
	'92~'93	'94	소 계			
1. 인력육성	3,836	3,005	6,841	3,993	4,083	2.3
2. 생산기반	13,652	9,796	23,438	11,414	15,184	33.0
3. 기계화	6,345	3,384	9,729	4,030	4,457	10.6
4. 영농규모화	7,525	2,390	9,915	2,809	3,375	20.1
5. 축산구조개선	9,904	6,935	16,839	7,214	7,084	△1.8
6. 기술개발	2,179	1,445	3,624	1,595	1,825	14.4
7. 유통개선	3,730	2,246	5,976	3,044	3,767	23.8
8. 시설현대화	2,244	1,723	3,967	2,555	3,418	33.8
9. 어업구조개선	4,410	2,843	7,253	3,162	3,878	22.6
10. 임업구조개선	4,396	2,636	7,032	2,848	3,440	20.8
11. 소득원개발	3,157	3,497	6,654	3,518	4,491	27.7
12. 생활환경개선	909	1,311	2,220	1,444	1,723	19.3
국고투융자	55,981	35,912	91,893	42,626	51,725	21.3
축산발전기금	6,296	5,299	11,595	5,000	5,000	-
계	62,277	41,211	103,488	47,626	56,725	19.1



### 3. '97~'98투융자 방향

□ 향후 2개년 ('97~'98)투융자 계획은 WTO체제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 핵심사업에 중점지원

- '96년 국고투융자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22% 수준을 증액 반영

(단위 : 억)

사 업 명	합 계 ( '92~'98)	'92~'95	'96예산 (안)	'97~'98 (계획)	주 요 사 업 내 용
1. 인 력 육 성	23,576	10,834	4,083	8,659	○ 후계자, 전업농 15만호 육
2. 생 산 기 반	86,063	34,852	15,184	36,027	○ 경지정리, 용수개발, 발기 정비, 기계화경작로 등
3. 기 계 화	30,720	13,759	4,457	12,504	○ 농기계반값공급, 일반용차 농기계 이용조직
4. 영농규모화	25,408	12,724	3,375	9,309	○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
5. 축산구조개선	55,053	24,053	7,084	23,916	○ 축종별경쟁력강화, 축산단지 가축계열화, 축산분뇨처리
6. 기 술 개 발	12,226	5,219	1,825	5,182	○ 연구개발, 기술보급, 정보
7. 유통 개 선	22,477	9,020	3,767	9,690	○ 도매시장, 산지가공, 산지유통시설
8. 시설현대화	17,699	6,522	3,418	7,759	○ 과수, 채소, 화훼 생산 및 유통지원, 잡업특작 등
9. 어업구조개선	24,225	10,415	3,878	9,932	○ 수산자원조성, 어항건설
10. 임업구조개선	21,500	9,880	3,440	8,180	○ 옥림, 조림, 임도 등
11. 소득원개발	24,682	10,172	4,491	10,019	○ 농공단지, 관광휴양자원
12. 생활환경개선	10,348	3,664	1,723	4,961	○ 주거환경, 정주권개발등
국 고 투 융 자	326,382	134,519	51,725	140,138	
축 산 발 전 기 금	27,595	16,595	5,000	6,000	○ '97이후 연간 3,000억원 수준 반영
합 계	353,977	151,114	56,725	146,138	

※ '97이후의 분야별, 세부사업별 투자예산과 연차별 재원조달규모는 매년 예산편성시 조경  
확정

## '96~'98 중점 투융자사업

### ◇ 생산기반 정비

- 경지정리 : 진흥지역내 미시행지역 136천ha를 '98년까지 모두 완료
  - 국고투자액:('95)4,129억원 →('96)4,874억원→('97~'98)8,353억원
- 용수개발 : 시행중인 지역은 '98년까지 완료하고, 진흥지역중 미착수지역 34천ha 신규 착공
  - 국고 투자액 : ('95)2,256억원→('96)2,792억원→('97~'98)7,020억원
  - ※ 진흥지역 수리안전담을 : ('95) 91% → ('98) 94%
- 밭기반정비 : 대상면적 110천ha중 '98년까지 23천ha 추진(2004까지 완료)
  - 국고 투자액:('95) 385억원→('96)1,109억원→('97~'98)2,602억원
- 기계화경작로 : 2004년까지 목표 12천km중 '98년까지 4,200km 건설
  - 국고 투자액 : ('95)151억원→('96)1,011억원→('97~'98)2,966억원

### ◇ 농업기계화

- 농기계 반값공급
  - 투자액 : ('96)2,322억원 → ('96)2,554억원 → ('97~'98)4,025억원
  - ※ 반값 공급외에 일반용자 확대 (국고용자 549억원 지원)
- 농기계이용조직:2001년까지 5,000개소 목표로 '98년까지 3,600개소 육성
  - 투자액 : ('95) 326억원 → ('96) 360억원 → ('97~'98) 501억원

### ◇ 시설현대화

- 채소·화훼 전문생산단지 조성 : '98년까지 시설채소 230, 화훼 115개 단지 조성 등
  - 투 자 액 : ('95) 1,501억원 → ('96) 1,619억원 →('97~'98) 3,930억원

◇ 축산업 구조개선

- 한우사육기반확충 : '98년까지 한우전업농 14,000호 육성
  - 투자액 : ('95)1,080억원 → ('96) 843억원 → ('97~'98)7,932억원
- 축산분뇨처리시설확충 : '96~'98기간동안 약 4만호에 대하여 시설지원
  - 투자액 : ('95)1,095억원 → ('96) 1,182억원 → ('97~'98) 2,102억원

◇ 시장·유통개혁 및 산지가공산업 육성

- 도매시장건설 : '98년까지 대도시 19개소, 중소도시 15개소 건설 완료
  - 국고 투자액 : ('95) 630억원 → ('96) 721억원 → ('97~'98) 975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 '98년까지 300개소 설치로 생산량의 30% 처리
  - 국고 투자액 : ('95) 376억원 → ('96) 278억원 → ('97~'98) 518억원
- 전통식품가공계열화 : '98년까지 1,361개소 지원
  - 국고투자액 : ('95)690억원 → ('96) 768억원 → ('97~'98) 2,458억원

◇ 전업농 육성

- 품목별 가족전업농 : '98년까지 쌀 3만호, 원예·특작·수산 등 6천호 육성
    - 국고투자액 : ('95) 1,940억원 → ('96) 1,964억원 → ('97~'98) 4,560억원
- ※ 2004년까지 15만호 육성

◇ 소득원 확충 및 생활환경개선

- 농공단지조성 : 2004년까지 400개소 조성 (약 30만명의 고용효과)
  - 국고투자액 : ('95) 172억원 → ('96)200억원 → ('97~'98) 927억원
- 문화마을 조성 : '98년까지 군당 1개소의 시범마을 조성 (136개 지구)
  - 국고 투자액 : ('95) 465억원 → ('96) 556억원 → ('97~'98) 2,678억원
-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옥실·입식부엌개량 추진
  - 국고 투자액 : ('95) 420억원 → ('96) 420억원 → ('97~'98) 840억원

'99이후 농림수산부문 투융자계획은

'97년경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검토

## II. 농어촌특별세 투용자계획

-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에도 균형있게 배분
- 국민성금적 성격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을 선정
-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운영
  - 농특세사업중 경쟁력제고 사업을 기존의 구조개선사업과 조화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정으로 집행

《 중점투자분야 》 : 2004년까지 10년간 15조원 투자

□ 농어업경쟁력강화분야 : 9조 775억원 (60.5%)

분야별	투자액	대상사업
○ 경쟁력제고사업	5조2,540 억원	경지재정리, 기술개발, 기술전문대, 중·소농 지원
○ 농어민속원사업	2조3,685	어항건설, 신용보증기금, 어촌종합개발, 임도건설
○ 유통개혁사업	1조4,550	유통시설지원 (물류센터, 포장센터 등)

□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야 : 4조 1,040억원(27.4%)

- 기초생활환경개선 4조1,04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도로확충, 하수도, 주택개량 등

□ 농어민복지증진분야 : 1조 8,185억원(12.1%)

- 농어민복지증진에 기본이 되는 사업 4조1,040억원      농어민연금, 의료서비스개선, 직업훈련 등

## 《 농어촌특별세 투융자계획 》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소요	'94추경	'95예산	'96예산(안)	'97예산(안)	2004
합 계	150,000 (100.0)	3,480 (100.0)	15,432 (100.0)	15,900 (100.0)	15,900 (100.0)	115,188 (100.0)
1.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90,775 (60.5%)	1,670 (48.0%)	9,273 (60.1%)	9,549 (60.1)	9,549 (60.1)	61,240 70,283
① 대구·경북지정리	43,000	320	2,931	3,623	3,623	36,126
② 농수산물유통기반 시설확충	14,550	700	1,870	1,614	1,614	16,366
③ 중소농고품질농업 생산지원	2,000	-	200	200	200	1,600
④ 농신보기금출연	7,000	200	800	700	700	5,300
⑤ 농어업기술개발	5,040	150	613	550	510	3,727
⑥ 기술전문대학육성	2,500	-	425	347	347	1,728
⑦ 어항건설	7,800	300	1,199	1,271	1,271	5,030
⑧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5,735	-	569	610	610	4,556
⑨ 입도건설	3,150	-	666	634	600	1,850
2. 농어촌생활여건개선	41,040 (27.4%)	1,450 (41.7%)	4,225 (27.4%)	4,175 (26.2)	4,175 (26.2)	31,190
① 농어촌도로정비	12,000	650	1,200	1,200	1,200	8,950
② 농어촌하수도정비	7,000	-	800	750	750	5,450
③ 농어촌주택개량	8,000	400	800	800	800	6,000
④ 농어촌폐기물처리지원	2,040	-	225	225	225	1,590
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000	400	1,200	1,200	1,200	9,200
3. 농어민복지증진	18,185 (12.1%)	360 (10.3%)	1,934 (12.5%)	2,176 (13.7)	2,176 (13.7)	13,715
① 농어민연금지출	8,000	10	455	672	654	6,863
② 농어촌의로서비스	4,785	200	801	819	788	2,965
③ 농어촌교육지원	2,100	100	350	350	350	1,300
④ 농어촌출신학생기숙사 건립	360	-	40	60	60	260
⑤ 농어촌공도서관건립	940	-	100	100	80	740
⑥ 농어촌민적업훈련	800	50	96	62	62	502
⑦ 농어민직업훈련	1,200	-	92	113	68	995

## 농어촌투융자계획 총괄(중앙투융자)

(42조 및 농특세 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92~'93	'94	'95	'96예산 (안)	'97~'98	계
1. 생산기반정비	13,642	10,116	14,345	18,807	48,073	104,983
2. 농업기계화	6,345	3,384	4,030	4,457	12,504	30,720
3. 시설현대화	2,244	1,723	2,755	3,618	8,159	18,499
4. 기술개발	2,179	1,595	2,271	2,375	6,660	15,080
5. 장애인력육성	3,836	2,991	4,355	4,430	9,412	25,024
6. 소득원개발	3,157	3,497	3,518	4,491	10,019	24,682
7. 축산업구조개선	9,904	6,949	7,214	7,084	23,902	55,053
8. 유통개선	3,730	2,946	4,914	5,381	12,686	29,657
9. 영농규모화	7,525	2,390	2,809	3,375	9,309	25,408
10.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909	3,321	8,403	8,774	18,787	40,194
11. 어업구조개선	4,410	3,143	4,930	5,759	13,355	31,597
12. 임업구조개선	4,396	2,636	3,514	4,074	9,544	24,164
<b>합 계</b>	<b>62,277</b>	<b>44,691</b>	<b>63,058</b>	<b>72,625</b>	<b>182,410</b>	<b>425,061</b>

## □ 42조원 연차별 투융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92~'93	'94	'95	'96예산 (안)	'97~'98 계 획	계
1. 생산기반정비	13,642	9,796	11,414	15,184	36,027	86,063
2. 농업기계화	6,345	3,384	4,030	4,457	12,504	30,720
3. 시설현대화	2,244	1,723	2,555	3,418	7,759	17,699
4. 기술개발	2,179	1,445	1,595	1,825	5,182	12,226
5. 정예인력육성	3,836	2,991	3,993	4,083	8,673	23,576
6. 소득원개발	3,157	3,497	3,518	4,491	10,019	24,682
7. 축산업구조개선	9,904	6,949	7,214	7,084	23,902	55,053
8. 유통개선	3,730	2,246	3,044	3,767	9,690	22,477
9. 영농규모화	7,525	2,390	2,809	3,375	9,309	25,408
10.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909	1,311	1,444	1,723	4,961	10,348
11. 어업구조개선	4,410	2,843	3,162	3,878	9,932	24,225
12. 임업구조개선	4,396	2,636	2,848	3,440	8,180	21,500
합 계	62,277	41,211	47,626	56,725	146,138	353,977

※ '99이후 투융자 계획은 '97년경 증기 재정계획 수립시 검토

□ 농특세 연차별 투융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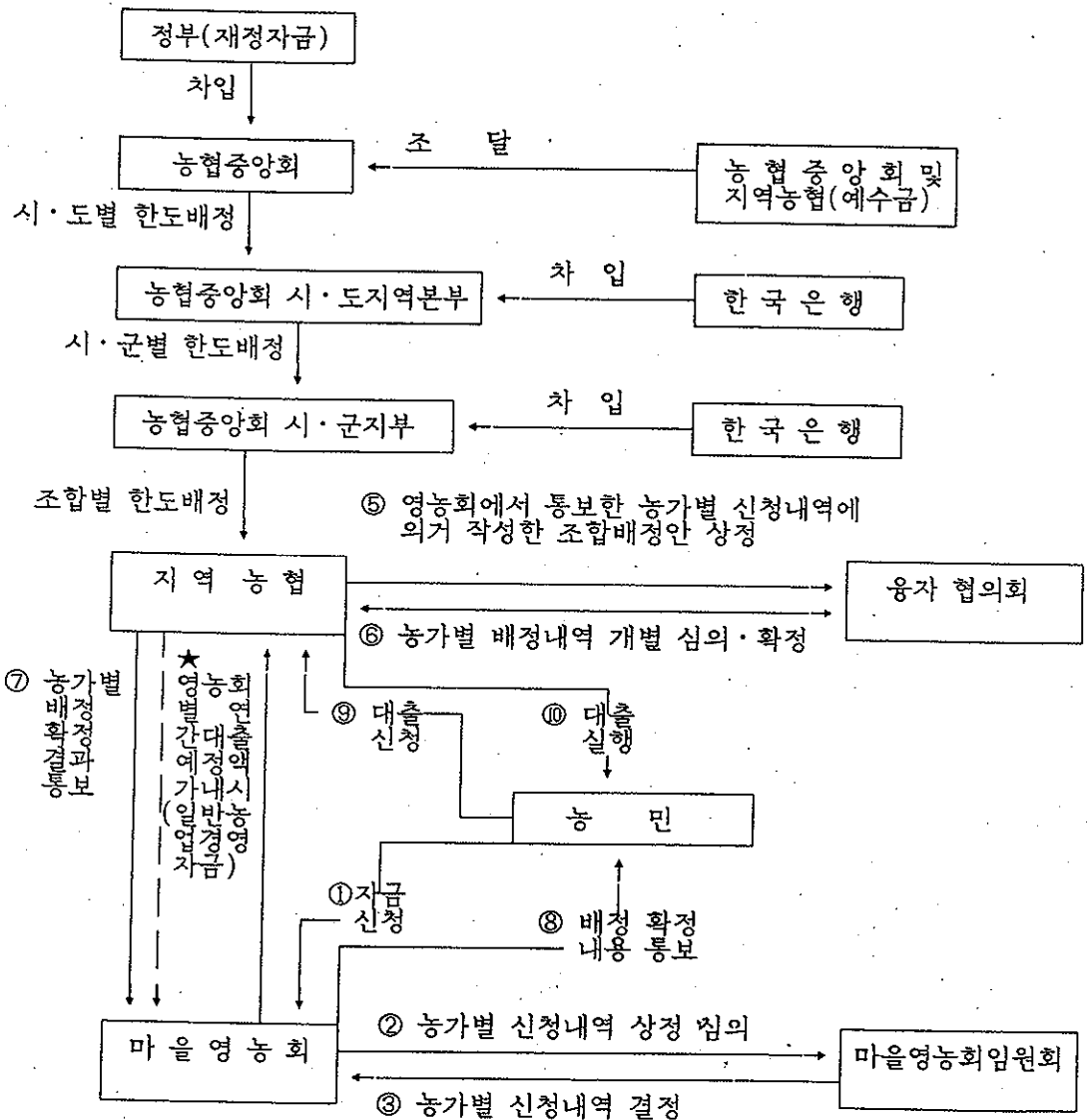
사 업 명	'94	'95	'96	'97~'98	'99~2004	계
1. 생산기반정비	320	2,931	3,623	12,046	24,080	43,000
2. 농업기계화	-	-	-	-	-	-
3. 시설현대화	-	200	200	400	1,200	2,000
4. 기술개발	150	676	550	1,478	2,186	5,040
5. 정예인력육성	-	362	347	739	1,052	2,500
6. 소득원개발	-	-	-	-	-	-
7. 축산업구조개선	-	-	-	-	-	-
8. 유통개선	700	1,870	1,614	2,996	7,370	14,550
9. 영농규모화	-	-	-	-	-	-
10.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2,010	6,959	7,051	13,826	36,379	66,225
11. 어업구조개선	300	1,768	1,881	3,423	6,163	13,535
12. 임업구조개선	-	666	634	1,364	486	3,150
합 계	3,480	15,432	15,900	36,272	78,916	150,000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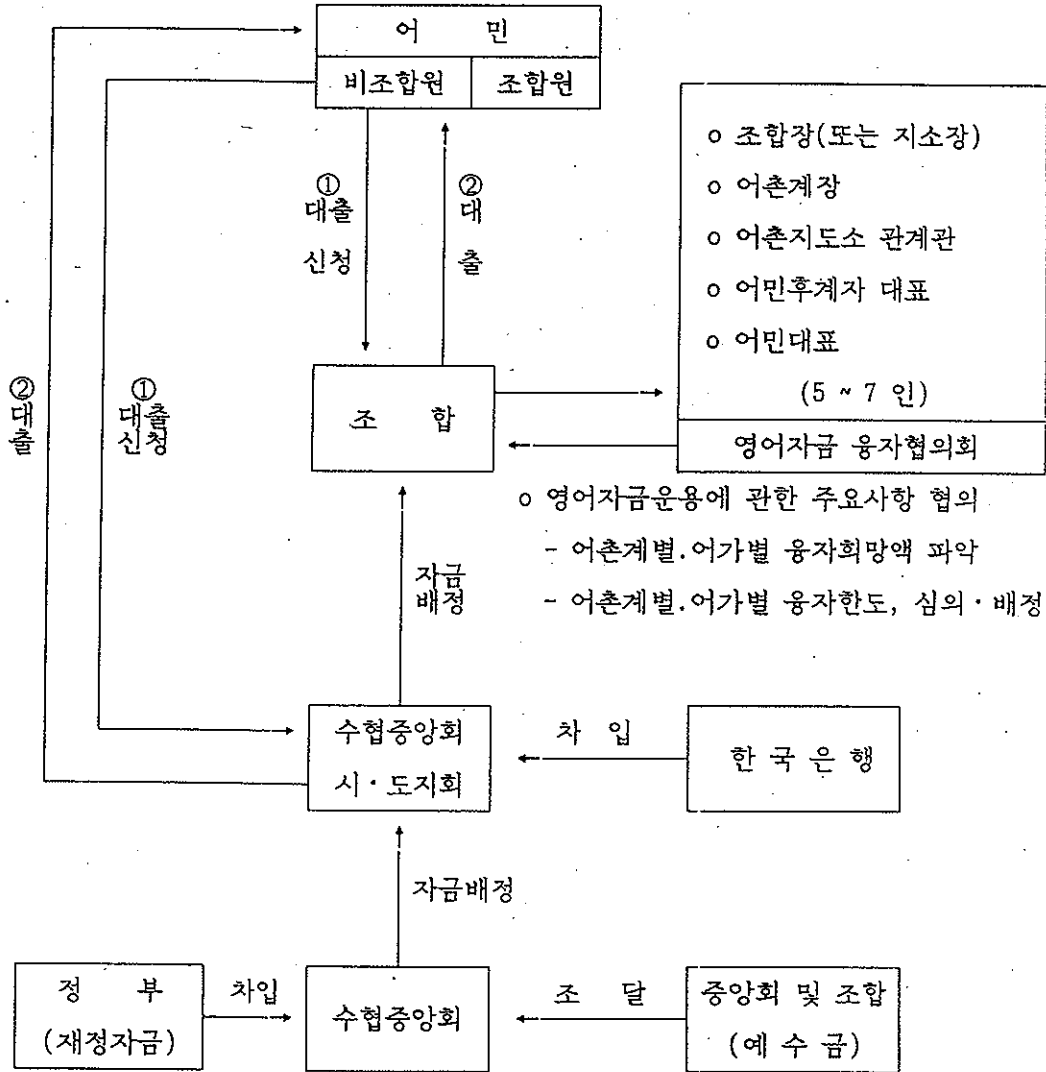
1. 자금별 대출체계도

가.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



< 대출조건 > 금리 : 연 5%, 대출기간 1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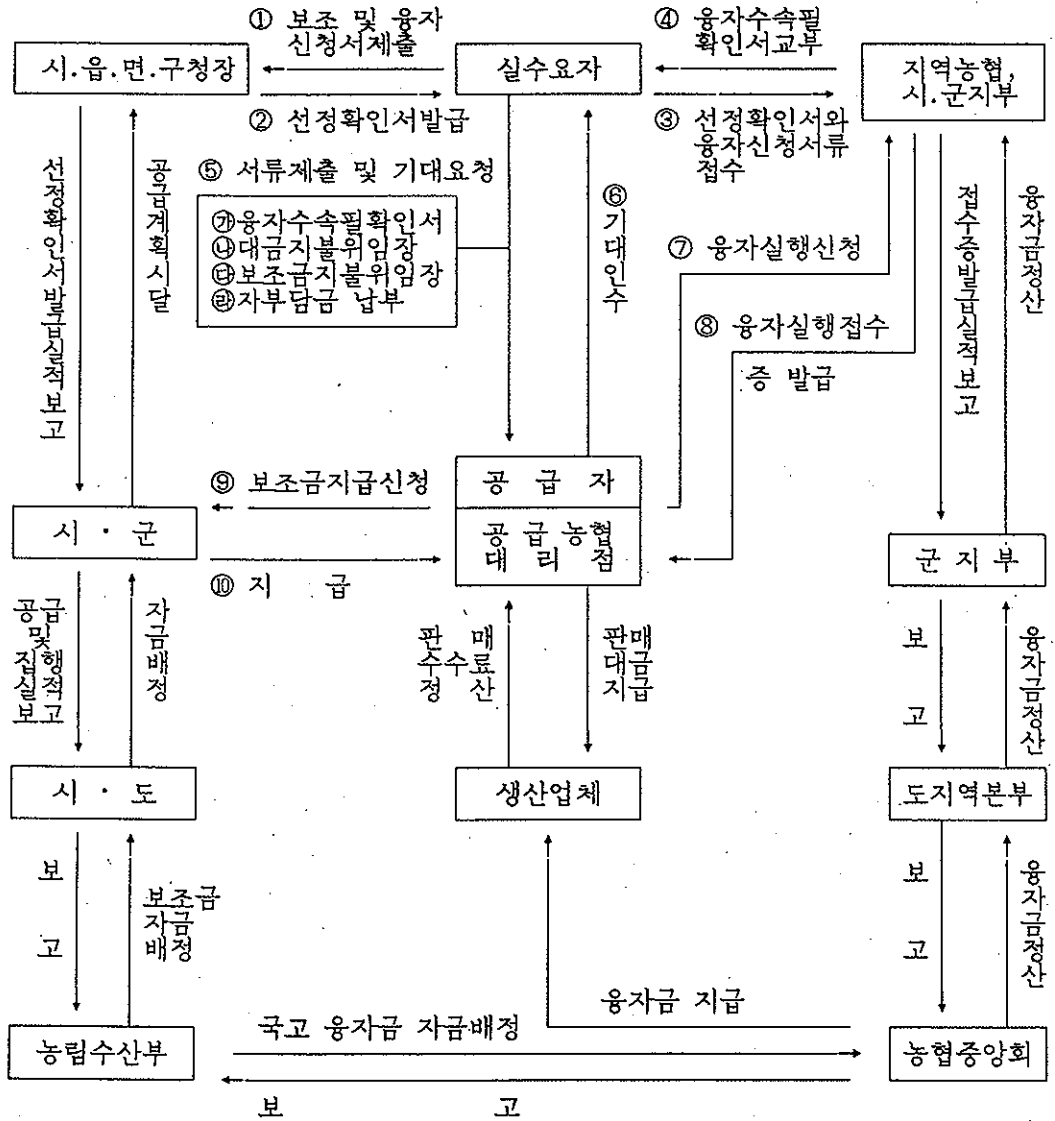
## 나. 영어자금



### < 대출조건 >

- 금리 : 연 5%(원양어업 : 연 6%)
- 대출기간 : 1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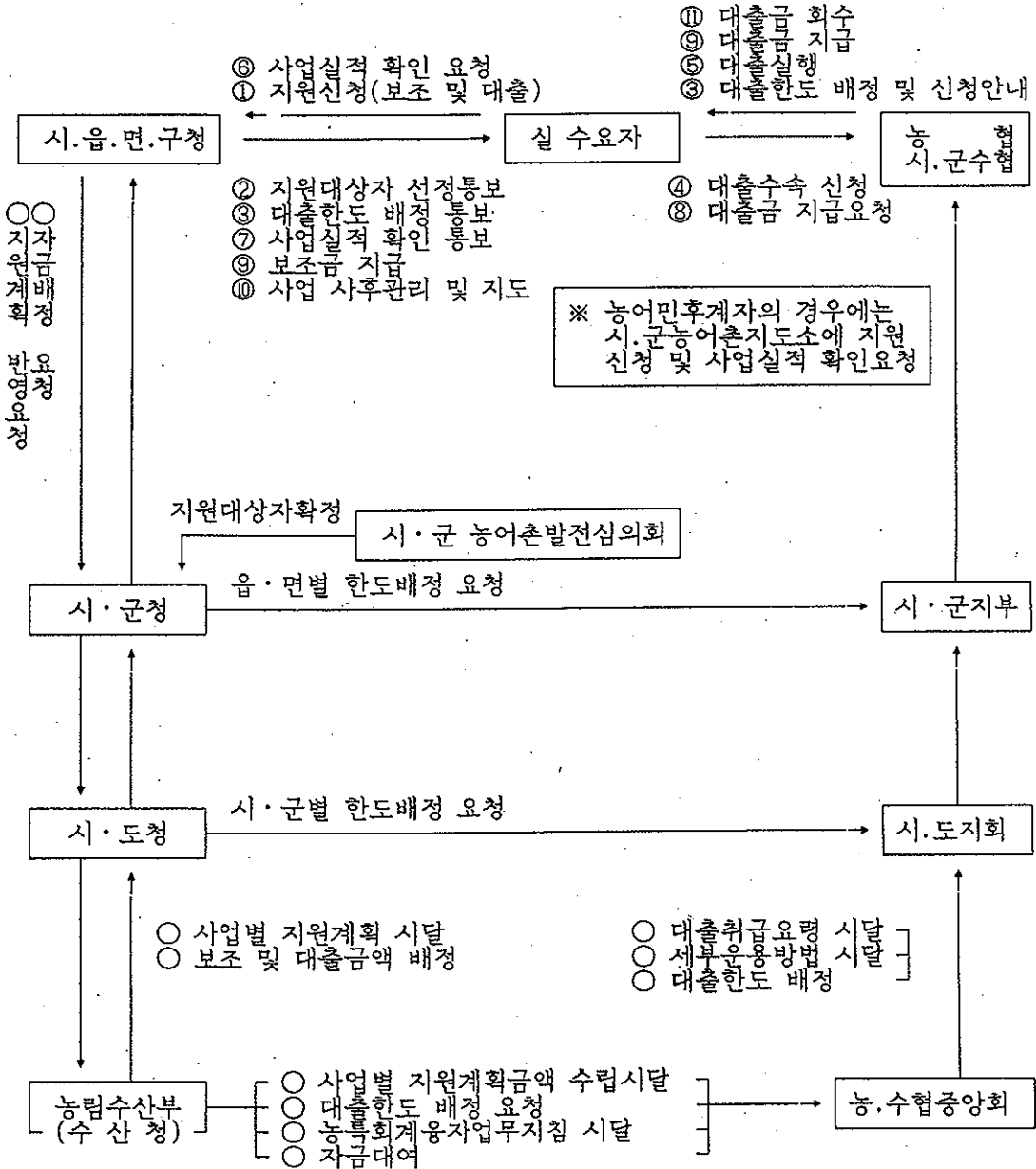
## 다. 농기계구입자금(농협)



### < 대출조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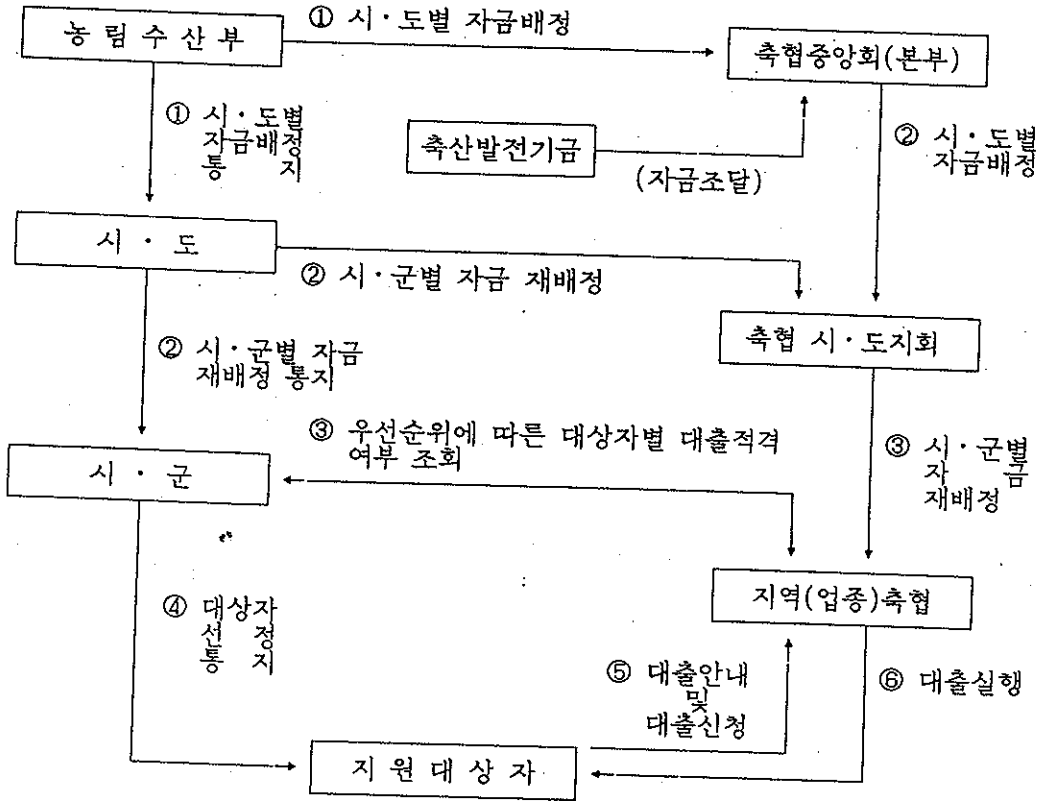
- 금리 : 연 5%
- 대출기간 : 1년거치 5~7년 분할 상환

# 라. 농특회계자금(후계자 포함) (농·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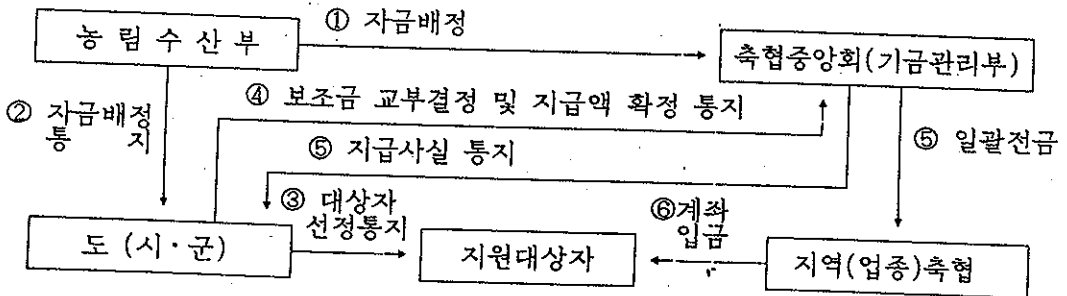


마. 축산발전기금(축협)

< 융자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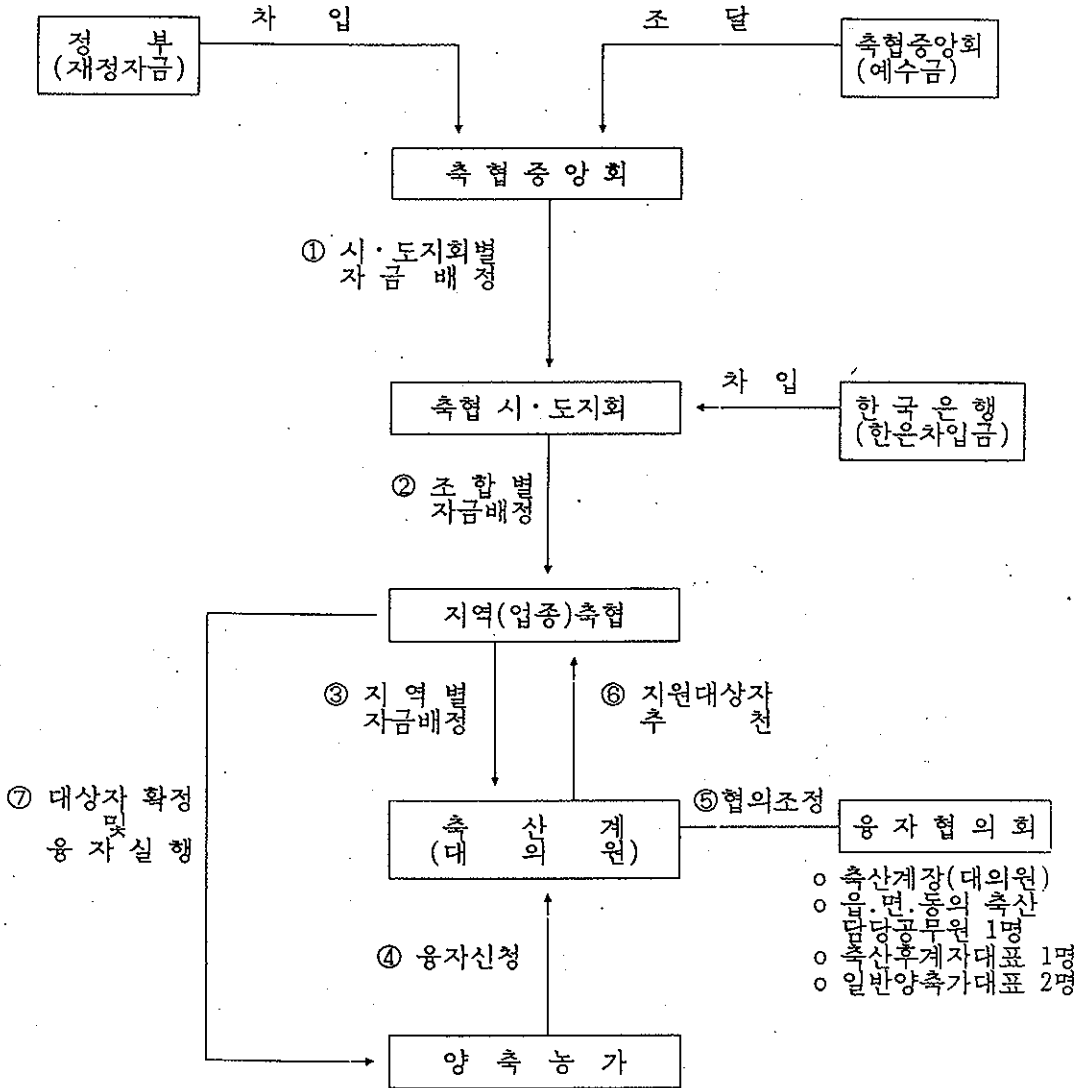


< 보조금 >



주) 지원대상자 선정업무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자율사업)의 표준체계도임

## 바. 양축자금(축협)



### < 대출조건 >

- 금리 : 연 5%
- 기간 : 1년 이내

## 2. 대출제도

### 가. 신용대출

#### ○ 대출한도

- 보증신용대출 : 2,000만원(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무보증신용대출 : 1,000만원
- 농어민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전액은 별도

#### ○ 연대보증인 1인 입보 원칙

- 1,000만원까지 무입보

### 나. 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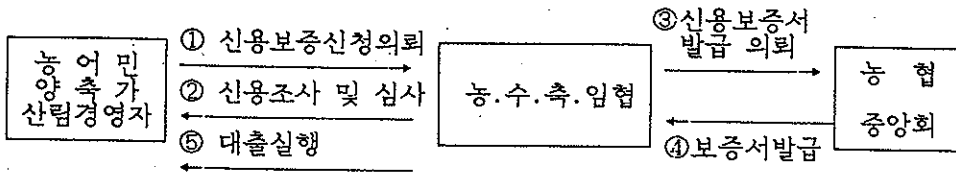
#### ○ 담보종류 및 담보취득비율

취득가능 담보물의 종류	담 보 취 득 비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산</li> <li>○ 부동산</li> <li>○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li> <li>- 기타(국채, 지방채, 사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액의 90% 이내(축협은 100% 이내)</li> <li>○ 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용가격의 80% 이내(단, 조합은 90% 이내)</li> <li>- 채권액의 90%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적금(예탁금)</li> <li>○ 확정채권</li> <li>○ 미확정채권</li> <li>○ 공제증권</li> <li>○ 정부의 채무보증서 (지방자치단체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입액의 90% 이내</li> <li>○ 채권액의 90% 이내</li> <li>○ 채권액의 80% 이내</li> <li>○ 해지환급금의 90% 이내(축협은 80% 이내)</li>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은행)의 지급 보증서</li> <li>○ 신용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li> <li>- 신용보증기금</li> <li>- 기술신용보증기금</li> <li>-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액의 9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 보험증권</li> <li>○ 선박</li> <li>○ 어업권</li> <li>○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담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액의 100% 이내</li> <li>○ 감정평가액의 70% 이내(원양선박 40% 이내)</li> <li>○ 감정평가액의 50% 이내</li> <li>○ 취득시 따로 정함</li> </ul>

주) 위 담보취득비율 중 동산, 부동산은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됨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 >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 심사평점별 보증한도

평 정 별	보 증 한 도		비고
	농어민, 각종 계	단체 및 법인	
50점 이상 ~ 60점 미만	3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60점 이상 ~ 70점 미만	5천만원 이내	2억원 이내	
70점 이상 ~ 80점 미만	1 억원 이내	3억원 이내	
80점 이상 ~ 90점 미만	1억5천만원이내	4억원 이내	
90점 이상	2 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주) 농어민, 각종 계에 대한 3천만원 초과보증시, 일정자격의 연대보증인 입보

## <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

담보등급	대상 담보물 종류	대 출 비 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81~9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등 창고류 ○ 기계, 기구 및 장치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61~8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 온실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운산, 돈사 및 계사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투자금액의 41~60%

(주) 이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 3. 대출취급시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 민		개인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서류	○ 농수축임협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용 자 신청시	○ 용자상담 및 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사본1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서에 한함) ○ 재무제표(신용조사생략시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 확인본
신 용 조사시	○ 사업현황서 ○ 최근 2기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 (최근 월말분)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또는 규약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 확인본
담보물 감정시	○ 담보물건(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서 ○ 공장의 경우 기계기구 목록	× × ×	○ ○ ×	× × ×	○ ○ ○	× × ×	○ ○ ○	
대 출 실행시	○ 인감증명서	×	○	×	○	○	○	

주) ○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수 있음

○ 대출시 차주 및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대출취급사무소에서 순회 출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 4. 대출관련 소요 제비용

##### 가.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 대출취급사무소의 자체 평가시 농민 및 농민단체(축협의 경우 축산관련자금)는 전액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차주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수협의 경우
  - 동일담보 물건에 대한 대출금액이 50백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사무소에서 정규감정절차를 생략하고 시가사정으로 갈음함(건당 수수료 : 15천원)
  - 대출금액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감정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나. 지당권설정 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림어업인이 조합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주택건설촉진법 제 16조)
  - ※ 설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어민이 농림어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 법무사 수수료(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 54조)
  - 기본수수료(건당) : 토지, 건물, 입목 : 18,000원  
공장저당, 선박재단 : 20,000원
  - 가산수수료

등록세 과세표준액	수 수 료	비 고
100만원 까지	2,000원	
300만원 까지	5,000	
500만원 까지	6,000	
1,000만원 까지	10,000	
2,000만원 까지	13,000	
2 억원 까지	매 2천만원마다 1만1천원씩 가산	
2억원 초과시	매 2천만원마다 1만원씩 가산	

다. 인지세(인지세법제 1조 제 1항 2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백만원 이하	면 제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0,000 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0,000 원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0,000 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 원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150,000 원
5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50,000 원
10억원 초과	350,000 원

※ 농.수.축.임협 조합원이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조세감면 규제법 제 81조 제 5호)

- 동일인의 용자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신용보증료

구	분	보 증 료 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기간 3년 미만	연 0.3%
	대출기간 3년 이상	연 0.2%

5. 기타

사업별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업자대출 취급지침 및 요령과 농.수.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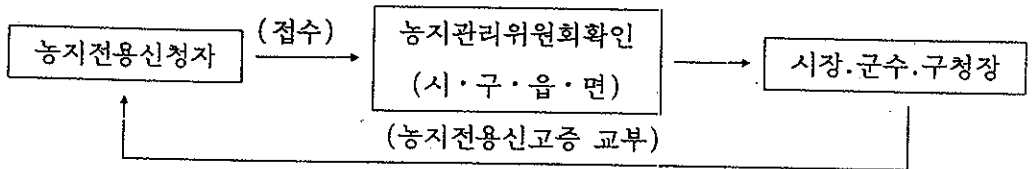
농업용시설 농지전용허가·신고안내

0 농지전용신고·허가처리권자

시 설 별	대상자별	신고(시장·군수)		허 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벼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시설	-			< 해 당 없 음 >			
농가주택	농업을주업으로하는 농가	660m' 이하	660m' 이하	660m' 이하	660m' 이하	-	-
농업용창고	농업을주업으로하는 농가	1,500m' 이하	1,500m' 이하	3천m' 미만 (신고면적제외)	1만m' 미만 (신고면적제외)	3천m' 이상	1만m' 이상
	그외 농가	-	-	3천m' 미만	1만m' 미만	"	"
축 사	농업을주업으로하는 농가	3,300m' 이하	7,000m' 이하	" (신고면적제외)	" (신고면적제외)	"	"
	그외 농가	-	-	3천m' 미만	1만m' 미만	"	"
농유림농수산물 유통·수산물 처리시설	농 가	-	3,300m' 이하	" (신고면적제외)	" (신고면적제외)	"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7천m' 이하	"	"	"	"
	농수축임협동조합	-	7천m' 이하	"	"	"	"
	기 타	-	-	3천m' 미만	1만m' 미만	"	"

# 1. 농지전용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가. 농지전용신고 절차



## 나. 신고신청시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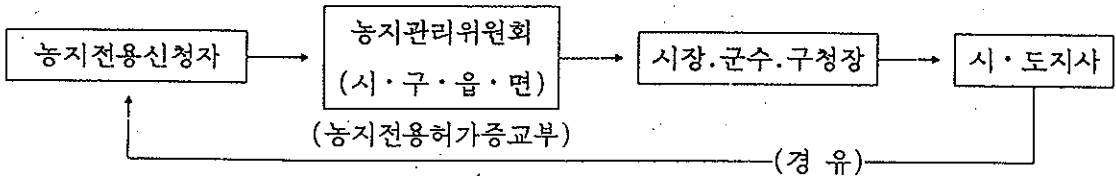
-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사용승락서)
- 인근 농지·농가에 피해가 있을 경우는 피해방지계획서

## 다. 기타

상기의 신고 농지전용대상시설들을 신고로 농지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등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집단영농에 피해가 있으므로 가급적 전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첨부서류

### 가. 농지전용허가 절차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900평(3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천평(1만㎡) }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를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게됨

### 나. 농지전용허가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도(시·도지사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는 지형도를 추가로 첨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소유일 경우에는 사용승락서)
- 인근 농지,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경우는 피해방지계획서

### 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농지전용허가시에는 이웃농지에 피해가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 첫째,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유독가스, 분진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며,
- 둘째,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나 농경지의 한 가운데 시설물을 산발적으로 설치하여 기계화영농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제한 하고 있음

셋째, 또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므로 동 지역에서는 다음 시설외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농가주택, 양축시설등 농·어업용시설,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시설등 농수산업에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 3천㎡미만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등 기타 공공시설

#### <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시설이외에는 설치할 수 있음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 총면적 3만㎡미만을 초과하는 시설

라.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 농업관련시설의 설치시 농지조성비 감면 >

시 설 별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농·어가 주택	전 액 면 제	전 액 면 제
농어업용시설(농사용창고, 축사, 양어장등), 농·림·축·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3,300㎡ 이하 전액 면제, 초과하는 면적은 50% 감면	전 액 면 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50% 감액	전 액 면 제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3,300㎡ 이하 50% 감액	전 액 면 제

- 농업관련시설의 설치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농어가·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가 농어업용시설 및 자가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전액면제함

"예" 농사용 창고, 자가생산한 농수산물 보관창고 또는 자기집에서 생산한 사과쥬스 공장등



농어용시설 건축허가·신고 안내

( '95. 10. 31현재 )

구분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농 립 지 역, 준 농 립 지 역, 자 연 환 경 보 호 전 지 역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이하</li> <li>◦ 연면적 85㎡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 초과</li> <li>◦ 연면적 85㎡ 초과</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도시지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 이하</li> <li>◦ 연면적 85㎡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 초과</li> <li>◦ 연면적 85㎡ 초과</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준도시지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 이하</li> <li>◦ 연면적 85㎡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100㎡ 초과</li> <li>◦ 연면적 85㎡ 초과</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li>◦ 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li> </ul>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200㎡ 미만</li> <li>◦ 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상</li> <li>◦ 연면적 50㎡ 초과</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도시지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400㎡ 미만</li> <li>◦ 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400㎡ 이상</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준도시지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400㎡ 미만</li> <li>◦ 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지역 연면적 400㎡ 이상</li> <li>◦ 도시계획구역</li> <li>◦ 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li>◦ 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li> </ul>

※ 허가권자, 신고처리권자 : 시장·군수(허가) : 읍장, 신고 : 읍장, 신고 : 읍·면장이 처리토록 규정된 경우도 있음)

구분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농 립 지 역, 준 농 립 지 역, 자 연 환 경 보 호 전 지 역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창 고 및 작 물 재 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미만</li> <li>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상</li>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도시지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미만(작물재 배사 400㎡ 미만)</li> <li>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상(작물재 배사 400㎡ 이상)</li>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준도시지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상(작물재 배사 400㎡ 이상)</li>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상(작물재 배사 400㎡ 이상)</li>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기 타 농 립 용 관 련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도시지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준도시지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0㎡ 초과</li> <li>도시계획구역</li> <li>고속국도, 철도 중심선 양측 300m 이내 구역</li> <li>일반국도 경계선 양측 50m 이내 구역</li> </ul>

※ 허가권자, 신고처리권자 : 시장·군수(허가) : 읍장, 신고 : 읍·면장이 처리토록 규정된 경우도 있음)

